

#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전략적 도입 방안

2021. 8



| 정훈 · 박하얀 · 권순오 · 변정윤 |



#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전략적 도입 방안

2021. 8



| 정훈 · 박하얀 · 권순오 · 변정윤 |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정 훈 세정연구팀장

### 공동연구원

박하얀 세정연구팀 연구원

권순오 세정연구팀 특수전문직 4급(세무사)

변정윤 세정연구팀 위촉연구원



# 목 차

I. 서론 .....	11
II. 표준세무감사파일 개요 .....	14
1. 표준세무감사파일 전반 사항.....	14
가. 등장 과정.....	14
나. 정의 및 목적.....	15
다. 표준세무감사파일 구현 시 고려 사항.....	16
2. OECD의 표준세무감사파일 글로벌 표준안.....	17
가. 표준세무감사파일의 형식.....	17
나. 표준세무감사파일 구성 항목.....	19
III. 해외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현황 .....	22
1. 포르투갈.....	22
가. 도입 과정.....	22
나. 도입 상세 내용.....	25
다.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	30
라. 효과 및 성과 .....	32
2. 오스트리아.....	34
가. 도입 과정.....	34
나. 도입 상세 내용.....	35

3. 프랑스	37
가. 도입 과정	37
나. 도입 상세 내용	38
4. 스페인	41
가. 도입 과정	41
나. 도입 상세 내용	42
다. 효과	45
5. 폴란드	46
가. 도입 과정	46
나. 도입 상세 내용	47
다. 효과	49
6. 노르웨이	51
가. 도입 과정	51
나. 도입 상세 내용	53
다.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	54
라. 효과	54
7. 그리스	55
가. 도입 과정	55
나. 도입 상세 내용	56
다. 효과	59
8. 글로벌 ERP 업체 대응 현황	60
9. 소결	62
IV. 표준세무감사파일 국내 도입 전 검토 사항	69
1. 도입 편익	70
가. 조세 행정 비용 절감	70
나. 세무조사 소요 비용 절감	71

다. 납세 준수 모니터링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	72
라. 정보 표준화에 따른 편익.....	73
2. 도입 비용.....	74
가. 시스템 구축 비용.....	74
나. 제도 순응 비용.....	80
3. 도입 가능 분야.....	81
가. 신고 검증.....	81
나. 신고 대체.....	85
다. 세무조사.....	91
4. 소결.....	92
V. 표준세무감사파일 국내 도입 방안 .....	97
1. 표준세무감사파일 국내 도입 시 사전 준비 사항.....	97
가. 법령 및 규정 재정비.....	97
나. 현행 국내 과세 인프라 현황 점검.....	100
다. 납세 협력 비용 최소화 방안 검토.....	106
2. 표준세무감사파일 국내 도입 로드맵 .....	108
VI. 결론 .....	112
참고문헌 .....	115

## 표 목차

〈표 II-1〉 OECD 권장 표준세무감사파일의 구조 .....	19
〈표 III-1〉 포르투갈의 SAF-PT 도입 과정 .....	25
〈표 III-2〉 e-fatura 사용 시 소득공제 혜택 .....	28
〈표 III-3〉 OECD 표준안 및 포르투갈 표준안 비교 .....	30
〈표 III-4〉 소득공제 가능 비용에 대해 발행된 계산서 건수 .....	33
〈표 III-5〉 프랑스의 FEC 데이터 구조 .....	39
〈표 III-6〉 SAF-T 도입 국가 비교 .....	67
〈표 IV-1〉 글로벌 ERP 업체 표준세무감사파일 예상 구축 비용 .....	75
〈표 IV-2〉 국내 ERP 업체 표준세무감사파일 예상 구축 비용(분석 및 설계) .....	77
〈표 IV-3〉 국내 ERP 업체 표준세무감사파일 예상 구축 비용(개발) .....	77
〈표 IV-4〉 총기능점수 산정 근거 .....	77
〈표 IV-5〉 보정계수 산정 근거 .....	78
〈표 IV-6〉 우리나라 신고서식상 공통서식 사항과 OECD 표준세무감사파일 비교 .....	86
〈표 IV-7〉 우리나라 VAT 신고와 OECD 표준세무감사파일 비교 .....	87
〈표 IV-8〉 우리나라 법인세신고와 OECD 표준세무감사파일 비교 .....	89
〈표 IV-9〉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시 편익 및 비용 .....	92
〈표 V-1〉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05

## 그림 목차

[그림 III-1]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 세수 및 gap 변화(2014~2017년) .....	32
[그림 III-2] 오스트리아 SAF-T의 이월화된 구조 .....	36
[그림 III-3] AEAT의 E-Office .....	44
[그림 III-4] 스페인의 2014~2019 VAT GAP 동향 .....	45
[그림 III-5] 폴란드 VAT GAP 변화(2014~2019년) .....	50
[그림 III-6] 그리스 myDATA 요약장부 예시 .....	58
[그림 III-7] 전 세계 ERP 시장 점유율(2020년 기준) .....	60
[그림 IV-1] 세무 신고 시 표준세무감사파일 제출방식 도입 시 구성안 .....	79
[그림 V-1] 원천납부명세서 갑, 을 .....	101
[그림 V-2] 세금계산서 양식(공급자보관용) .....	103
[그림 V-3]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 양식 .....	104
[그림 V-4] 표준세무감사파일 국내 도입 로드맵 .....	111



## I. 서론

- 정보통신 및 전산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기록 사용의 증가는 복잡한 납세협력 및 과세행정 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협력 및 과세행정비용의 절감 및 적정 세액 산정을 가능하게 함
  - 정보통신 및 전산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업의 경제활동 영역 확대 및 복잡성 증가는 조세 행정 절차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동신고 및 세액계산, 자동적 세무조사 등은 세액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거래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행정비용을 낮출 수 있음
  - 또한 전산화로 인해 보다 많은 정보로 적정한 세액에 대한 적시 검증이 가능해지며, 자동화로 인해 오류 등이 줄어들 수 있음
  
- 조세행정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최종적 단계는 정보의 실시간 보고에 따른 납세신고의 생략과 신고 검증 및 세무조사의 자동화로 볼 수 있음
  - Ernst & Young의 디지털화 수준 분류에서는 최종 단계인 Level 5를 실시간 세무조사를 넘어 세무상 양식 없이 자동적 정보제공에 따른 세액산정과 납세자의 확인으로 정의하고 있음<sup>1)</sup>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신고, 기업의 비즈니스 및 회계 데이터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의 정립은 세무 신고 및 검증, 세무조사의 자동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됨

---

1) Ernst & Young, *Tax authorities are going digital*, 2017, p. 2.

- 이와 관련하여 최근 EU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표준세무감사파일(SAF-T: Standard Audit File for Tax)이 도입되는 추세이며, 이는 조세분야의 전산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표준세무감사파일은 OECD에서 제안한 정형화된 보고형식 파일로서 기업과 세무당국 간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 데이터의 전자적 교환이 가능하게 함
  - 특히 조세분야의 전산화를 통하여 방대한 양의 자료의 실시간 보고 및 자동적 신고 검증 및 세무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세무당국의 납세협력 및 과세행정 비용의 감축이 이루어지고 적정한 납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역내 여러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많아 해당 기업들에 대한 세무 신고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국가 간 부가가치세 격차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표준세무감사파일의 도입하는 것으로 보임<sup>2)</sup>
    - 유럽집행위원회는 2022년 또는 2023년 중으로 유럽연합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단일화하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전자 인보이스의 확장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임
  - 현재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폴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등 다수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표준세무감사파일을 도입하고 있음
  
- 표준세무감사파일이 전 세계에 걸쳐 널리 도입된 상황은 아니나, 향후를 대비하여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미국, 일본 등의 비EU 회원국들에서는 아직까지 표준세무감사파일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까지 표준세무감사파일의 국내 도입 시 도입 가능 범위 및 예상 편익·비용과 관련하여 분석된 연구가 없는바,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임

2) Tax Notes, "Emerging From Crisis: The Changing EU VAT Landscape," 2020. 10. 19., <https://www.taxnotes.com/tax-notes-international/value-added-tax/emerging-crisis-changing-eu-vat-landscape/2020/10/19/2d1jt?highlight=saf-t>, 검색일자: 2021. 5. 13.

- 본 연구는 표준세무감사파일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 실제 도입 시 준비가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함으로써 도입이 결정될 경우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제시하고자 함
  -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제안한 OECD의 보고서와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도입한 국가들의 도입 현황 및 효과 등을 조사함
  - 기업 및 과세관청 측면에서의 예상 편익을 기존 OECD 보고서 및 도입 국가들의 언급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ERP 시스템 변환 비용, 과세관청 비용, 조세 순응 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봄
  - 또한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가능 분야에 대해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서 표준세무감사파일의 도입 시 개정이 필요한 법령과 국내 과세 인프라 현황을 확인함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도입이 진행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실행 단계 로드맵을 제시함

## II. 표준세무감사파일 개요

### 1. 표준세무감사파일 전반 사항

#### 가. 등장 과정<sup>3)</sup>

- OECD 재정위원회는 2002년 납세 순응 및 과세 관청의 효율성, 효과성 및 공정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세무행정포럼(Forum on Tax Administration, 이하 FTA)을 설립하여 OECD 회원국의 세무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FTA는 Tax e-Audit Group을 비롯한 국제적인 소프트웨어 표준을 개발하는 전문 그룹의 지원을 받아 과세 플랫폼 개발에 노력을 기울임
  
- FTA는 2005년 표준세무감사파일의 기초가 되는 ‘비즈니스 및 회계 소프트웨어의 납세 순응 지침(Guidance on tax compliance for business and accounting software)’과 함께 ‘표준세무감사파일 지침 1.0(Guidance for Standard Audit File - Tax Version 1.0)’을 공개함
  - ‘비즈니스 및 회계 소프트웨어의 납세 순응 지침’은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 원칙에 대해 논의한 1998년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Conference에서 합의된 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작성됨

---

3) 정훈·박하얀·박소현,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3 내용 재정리

- 2010년에는 ‘표준세무감사파일 지침 2.0(Guidance for Standard Audit File - Tax Version 2.0)’을 통해 현재의 표준안을 완성함
  - 2005년 발표한 ‘표준세무감사파일 지침 1.0’은 초안 격으로, 2010년 발표한 2.0 버전은 구성 항목이 기존 항목에서 재고 및 고정자산 관련 자료까지 확장됨
  - 또한 2010년 OECD는 ‘세무조사 검증을 위한 테스트 절차 지침(Guidance for Test Procedure for Tax Audit Assurance)’도 함께 공개하여,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정합성 및 실질 테스트 수행 목록도 제시함
    - 정합성 테스트는 데이터가 조직이 규정하는 표준을 충족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실질테스트는 거래 내용이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임

## 나. 정의 및 목적

- OECD에서도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본원에서 2019년 진행한 기존 연구에서는 OECD의 논의를 종합하여 표준세무감사파일을 과세 관청이 규정하는 세무 관련 자료를 국제적 표준인 XML 스키마 형태로 통합 제출한 전자 파일로 정의한 바 있음<sup>4)</sup>
  - 과세 기관의 조사관이 세금 신고의 오류 식별 목적으로 회계 자료를 테스트할 때 활용할 수 있음
  - 납세자가 작성하는 모든 사업 및 회계 기록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됨
    - OECD는 공통 형식으로 XML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 및 사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형식의 파일을 활용하거나 구조 문서가 추가될 수 있음
- 표준세무감사파일은 세금 신고 검토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과세 당국의 행정 비용과 납세자의 협력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sup>5)</sup>

4) 정훈·박하얀·박소현,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4 내용 보완 및 재정리

- 모든 분석 자료의 형식이 규격화되는 세계적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세무 관련 정보 교환 시 비용을 낮추고, 자료의 비교 및 검토를 용이하게 함
- 조세 협력 비용 및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의 회계 관련 정보의 전자적 전환 및 즉시 발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함
  - 시스템은 회계 장부의 개별 항목에 대해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변경 사항을 포함한 수익을 입증하는 연계 및 추적 기록들을 생성해야 함
    - 각 항목은 영수증, 지불 내역, 재고 등 관련 프로세스 및 링크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음
    - 작성 변경 사항과 모든 관련 증빙 자료를 동반하므로, 기록의 진위 여부와 사전 내부 검증이 가능해짐
  -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 내에 자동화된 검증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 세금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저장된 기록들을 표준세무감사파일의 형태로 생성 및 발송할 수 있어야 함

#### 다. 표준세무감사파일 구현 시 고려 사항<sup>6)</sup>

- 법적 체계를 비롯하여 역사적 배경, 관행, 문화 등 처한 환경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획일화된 표준보다는 각 국의 세무행정 시스템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유연성이 확보된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5) 2005년 OECD는 표준세무감사파일 가이드라인의 초안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및 회계 소프트웨어 조세 순응 지침'에서 표준세무감사파일의 기본적 방향과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표준 개발 시 반영이 필요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음

6) 정훈·박하얀·박소현,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p. 10~11 내용 보완 및 재정리; OECD, *Guidance on tax compliance for business and accounting software*, Forum on Tax Administration, Center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May 2005.

- 국내외 세무관계자와 이해 관계자의 협력을 통한 이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 제정, 시스템 개발자 및 회계 조직과의 협업, 납세자들의 자발적 동의 등 전제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존재함
    - 납세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전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보다 납세자 친화적인 표준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수용을 촉진할 수 있음
    - 표준세무감사파일의 개별 항목의 정의 및 구조 결정 시 시스템 개발자와 회계 조직과 협력할 경우, 관련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표준을 이해하고 소프트웨어에 반영할 수 있음
  - 국가별 표준 설계 시 교류가 활발한 국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협력국 간에 일관성 있는 표준이 도입될 경우, 다국적 기업이 과세 자료 제출 시 국가별 상이한 요건들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시스템 구현 시 기업이 기존에 사용하던 회계 시스템과 납세 시스템을 통합하는 경우, 기업 측에서 그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음
  - 기업이 납세 규정을 준수하는 데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자발적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음
  - 전문적 회계 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 기관과 규제 기관의 조사 수행에 필요한 거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상시 기록 및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에도 적합한 회계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과세 관청뿐만 아니라 모든 연계 부처들이 통합된 표준 시스템을 도입할 시, 과세 기관 및 각 부처의 자료 획득 비용과 기업의 납세 협력 비용을 한층 더 절감할 수 있음
  - 납세자는 과세 관청 외에도 통계청, 관세청 등 다른 정부 부처에도 정보 제출 의무를 지닐 수 있는데, 이때 모든 부처가 표준세무감사파일과 통일된 제출 형식을 사용할 경우 제출 비용이 절감됨

## 2. OECD의 표준세무감사파일 글로벌 표준안<sup>7)</sup>

- OECD는 2010년 *Guidance for Standard Audit File - Tax Version 2.0*을 통해 표준세무감사파일의 데이터 구성요소를 포함한 구조 및 형식 등 기술적 측면에 대해 제시함
  - 신뢰할 만한 기업의 회계 시스템으로부터 지정한 특정 시기의 데이터를 표준화된 레이아웃과 포맷으로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작성하게 함

### 가. 표준세무감사파일의 형식

- 표준세무감사파일은 전반적인 전자적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 기존에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데이터 형식을 채택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의 사업 및 재무 관련 데이터는 XBRL이나 XBRL-GL과 같은 XML 기반의 표준으로 변환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표준세무감사파일 또한 XML을 기반으로 작성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실제 도입 시 XML 양식의 채택 여부는 개별 과세 기관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국경 및 기업을 초월하는 포괄적인 도입을 계획한다면 XML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되어야 함을 유념하고 있어야 함
-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축적될 수 있으므로, XML을 기초로 하여 다른 형식과 구조들이 기술 문서로서 추가될 수 있음
  - 현재 사용되는 XML은 XBRL-FR에 연결할 수 있는 별도의 구조 등을 정의하고 있음

7) 정훈·박하얀·박소현,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p. 11~15 내용 보완 및 재정리; Forum on Tax Administration, *Guidance for Standard Audit File - Tax Version 2.0*, OECD, 2010. 4. 10.

나. 표준세무감사파일 구성 항목

- OECD가 제안하는 표준세무감사파일 표준안은 ① 표제(Header) ② 마스터파일(MasterFiles) ③ 총계정원장 입력값(GeneralLegerEntries) ④ 원천문서(SourceDocuments) 의 네 개의 최상위 항목하에 다단계의 하위 항목들이 배치되어 있음
  - 최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약 1,200개가량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상위 항목과 이를 구성하는 하위 항목은 도입하는 국가의 과세 환경에 적합하게 삭제, 추가 혹은 재배치할 수 있음
  - ‘표제’는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작성한 업체 및 회계의 특성 관련 정보로 구성됨
  - ‘마스터파일’은 개별 거래와 관련한 고정적 정보나 전반적 유형을 구분하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음
  - ‘총계정원장 입력값’에는 거래 세부 내역을 표시하는 항목들이, ‘원천문서’에는 계산서, 지불 내역, 물류 이동, 자산 거래 등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됨

〈표 II-1〉 OECD 권장 표준세무감사파일의 구조

항목명	내용 및 하위항목
<b>1. 표제(Header)</b>	
① SAF-T 파일 버전(AuditFileVersion)	
② 국가코드(AuditFileCountry)	ISO 3166-1 기반
③ 관할 세무당국 코드(AuditFileRegion)	ISO 3166-2 기반
④ SAF-T 파일 생성일(AuditFileDateCreated)	
⑤ SAF-T 생성 소프트웨어 회사명(SoftwareCompanyName)	
⑥ SAF-T 생성 소프트웨어명(SoftwareID)	
⑦ SAF-T 생성 소프트웨어 버전(SoftwareVersion)	
⑧ 회사명 및 주소(Company)	
⑨ 기본 통화(DefaultCurrencyCode)	ISO 4217 기반
⑩ SAF-T 파일 사용자 설정 기준(SelectionCriteria)	
⑪ 비고(HeaderComment)	

〈표 II-1〉의 계속

항목명	내용 및 하위항목
⑫ 회계 기반(계산서/현금 등)(TaxAccountingBasis)	
⑬ 과세 주체(부서/지사 등)(TaxEntity)	
⑭ 기타(###other)	
<b>2. 마스터파일 (MasterFiles)</b>	
① 총계정원장 기본 정보(GeneralLedgerAccounts)	
② 분류사항(Taxonomies)	분류코드
③ 고객 정보(Customers)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계좌정보, 고객ID, 대변 및 차변 기초잔액 등
④ 공급 업체 정보(Suppliers)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계좌정보, 공급자ID, 대변 및 차변 기초잔액 등
⑤ 과세 정보(TaxTable)	과세 코드, 세율 등
⑥ 단위표(UOMTable)	
⑦ 분석 코드(AnalysisTypeTable)	원가 단위, 원가중심점 등
⑧ 행위 유형(MovementTypeTable)	판매, 구매, 조정 등
⑨ 상품(Products)	상품코드, 그룹코드, 수출입품코드, 단위, 세금 등
⑩ 재고(PhysicalStock)	보관장소, 위치, 상품코드, 상품분류 및 유형, 소유자정보 등
⑪ 소유자 정보(Owners)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⑫ 자산(Assets)	자산명, 공급자, 구입일, 취득일, 가치, 총계정원장 코드
⑬ 기타(###other)	
<b>3. 총계정원장 입력값(GeneralLedgerEntries)</b>	
① 항목 번호(NumberOfEntries)	
② 차변 총액(TotalDebit)	
③ 대변 총액(TotalCredit)	
④ 분개(Journal)	거래 세부 내역

〈표 II-1〉의 계속

항목명	내용 및 하위항목
<b>4. 원천문서(Source Documents)</b>	
① 매출계산서(Sales Invoice)	
② 매입계산서(Purchase Invoices)	
③ 지불내역(Payment)	지불일자, 방식 등
④ 물류이동(Movement Of Goods)	
⑤ 자산거래(Asset Transaction)	거래유형, 일자, 공급자, 가치 등

자료: 정훈·박하얀·박소현,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p. 13~14.

### Ⅲ. 해외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현황

#### 1. 포르투갈

##### 가. 도입 과정

##### 1) 도입 시기 및 확대 과정<sup>8)</sup>

- 포르투갈은 2008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SAF-T를 도입하였으며, 포르투갈형 SAF-T를 SAF-PT라고 명명함
  - SAF-PT 도입을 통해 납세 과정에서의 문제 상황을 적시에 탐지하고, 세무조사 절차의 속도를 향상시키며, 조세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08년 도입과 함께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들에게 계산서와 선적 문서, 회계 관련 정보를 SAF-PT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요구됨<sup>9)</sup>, <sup>10)</sup>
  - 2011년부터 이미 발행한 문서의 내용 변경이 불가능한, 포르투갈 세무국에서 인증한 물류 관리 및 계산서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함
  
- 2013년 본격적으로 제도 확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개별 사업체가 기존 사용하던 ERP 시스템의 조정과 함께 포르투갈 세무국과의 통신 채널이 마련됨

8) 정훈·박하얀·박소현,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p. 39~40.

9) Avalara, "Portuguese SAF-T," <https://www.avalara.com/vatlive/en/country-guides/europe/portugal/portuguese-saf-t.html>, 검색일자: 2021. 1. 5.

10) PWC, *SAF-PT, Communication of billing and logistic information to Portuguese Tax and Customs Authorities*, 2014.

- 2013년 1월 계산서의 월별 제출, 7월 물품 이동 시 관련 문서의 사전 제출이 의무화됨
- 2014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시스템인 e-fatura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초안과 메모 등을 포함한 문서들에 대한 월간 전송을 비롯하여 연말 재고 정보를 SAF-PT로 제출하게 함
  - SAF-PT를 별도로 제출하는 사업체의 경우 해당 시스템 사용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됨
- 2017년 7월 포르투갈 세무국의 '기업정보 간소화 시스템(Informacao Empresarial Simplificada, IES)' 관련 사항 공표 후, 2018년부터는 월별 신고 형식이 XML만 허용됨
  - 2007년 도입된 윈스톱 입력을 통해 사업장 및 정부 기관을 포함한 네 개의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IES를 업그레이드하는 IES+ 계획을 공표함
  - 월별 및 연간 수익률 모두 XML 형식의 파일을 생성해야 하며, 기존에 TXT 파일의 형태로 제공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서까지 XML로 통합됨<sup>11)</sup>
-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던 SAF-PT의 의무 구현 날짜를, IES+의 미리채움 서비스와의 상호 연결을 위해 2020년 회계연도를 처리하는 2021년 1월 1일부터 SAF-PT 사용을 의무화함<sup>12)</sup>

## 2) 관련 법령

- 2012년 물품 운송에 대한 문서와 관련한 Decree-law No. 198/2012의 입법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No. 340/2013 조례(명령)를 통해 전자계산서 발행 소프트웨어의 인증 요구 사항을 규정함

11) SAP Help Portal, "VAT Declaration," <https://help.sap.com/viewer/9b351d6e33a0496598e4b58782565e8a/1709%20001/en-US/7223b05278636656e10000000a445394.html>, 검색일자: 2021. 1. 14.

12) NEWCO, "SAF-T in Portugal," <https://www.newco.pro/en/blog/saf-t-in-portugal>, 검색일자: 2021. 4. 7.

- 2019년 2월 15일 Decree Law No. 28/2019 법령을 발표하여, 세금 목적을 위한 계산서 및 기타 문서 처리를 비롯한 납세자의 장부 보관, 회계 기록 및 지원 문서의 전자적 저장에 적용되는 규칙을 개정함<sup>13)</sup>
  - 2019년 3월 18일까지 납세자는 데이터 보관 위치 및 관련 정보를 포르투갈 세무국에 알려야 함
  - 2019년 6월 30일까지 모든 납세자는 계산서 및 세무 관련 문서를 발행한 사업장, 해당 문서 처리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각 소프트웨어의 인증 번호,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 및 설치한 대리점 및 설치 업체의 식별 코드를 제출해야 함
  
- 2020년 8월 3일 포르투갈 정부는 Decree-Law no. 48/2020 법령을 통해 SAF-PT 회계 파일의 사용 사례 및 전송 방법을 정의함<sup>14), 15)</sup>
  - 상기한 Decree Law No. 28/2019에서 규정하였던 소프트웨어의 사용 사업장과 인증 번호를 비롯한 설치 및 관리자 관련 정보 제출의 의무를 철회함
  - 또한 본 법령을 통해 연간 회계 및 세금신고서(IES/DA) 제출 시 불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데이터 필드가 사전에 익명화되거나 빈칸 처리되는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였으며, 해당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 과세 대상자가 세금 신고(IES/DA) 목적으로 제출한 SAF-PT 파일은 15년간 보관해야 하며, 그 기한 이후 6개월 이내에 파기해야 함<sup>16)</sup>

13) Deloitte - Tax@hand, "New rules introduced for processing, issuance and storage of invoices," <https://www.taxathand.com/article/11199/Portugal/2019/New-rules-introduced-for-processing-issuance-and-storage-of-invoices>, 검색일자: 2021. 4. 8.

14) Deloitte - Tax@hand, "Details published on submission of Accounting SAF-T (PT) file," <https://www.taxathand.com/article/15115/Portugal/2020/Details-published-on-submission-of-Accounting-SAF-T-PT-file>, 검색일자: 2021. 4. 8.

15) Garrigues, "Amendments on SAF-T accounting file and reporting obligation on the establishments where invoices are issued," [https://www.garrigues.com/en\\_GB/new/amendments-saf-t-accounting-file-and-reporting-obligation-establishments-where-invoices-are](https://www.garrigues.com/en_GB/new/amendments-saf-t-accounting-file-and-reporting-obligation-establishments-where-invoices-are), 검색일자: 2021. 4. 8.

16) Decree Law No. 48/2020

〈표 Ⅲ-1〉 포르투갈의 SAF-PT 도입 과정

연도	내 용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세 대상 SAF-PT 도입</li> <li>• 청구서(세금계산서), 선적 관련 문서, 회계 흐름 등의 정보를 SAF-PT 파일로 추출하여 제출</li> </ul>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국 인증 물류관리 및 계산서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li> </ul>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cree-law No. 198/2012(물품운송문서 관련 SAF-PT 입법)</li> </ul>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관련 서류 월별 제출</li> <li>• 전자세금계산서(e-fatura) 도입(2014년 의무화)</li> <li>• Portaria No. 340/2013(전자계산서 발행 소프트웨어의 인증 요구 사항 규정)</li> </ul>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문서 월별 전송, 연말 재고 관련 정보 제출</li> </ul>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ES+ 도입 계획 공표(2019년 도입)</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AF-PT의 신고형식 XML로 단일 의무화</li> <li>• 공적계약 관련 전자계산서 관련 법령 Decree-Law no. 123/2018 발표</li> </ul>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cree-Law No. 28/2019 발표(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 제출 의무화)</li> <li>• IES+ 도입</li> </ul>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cree-Law No. 48/2020 발표(SAF-PT 회계 파일의 사용 사례 및 전송 방법 정의)</li> </ul>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AF-PT 사용 의무화</li> </ul>

자료: 정훈·박하얀·박소현,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40 내용 보완 재정리

## 나. 도입 상세 내용

### 1) 대상

- 포르투갈의 SAF-PT는 2020년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이 5만유로 이상인 비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함<sup>17)</sup>

17) Autoridade tributaria e aduaneira, *A tool for e-Audit and Compliance*, IOTA Annual International

- 매출액 기준은 2018년 10만유로, 2019년 7만 5천유로, 2020년 5만유로로 점차 낮아짐<sup>18)</sup>

## 2) 신고 상세

- SAF-PT 적용 대상 업체는 ① 전자 회계자료 ② 전자세금계산서 ③ 물품 운송 관련 문서를 웹사이트의 양식이나 SAF-PT의 형태로 개별적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정보가 포함된 총계정원장을 SAF-PT 파일 혹은 세금신고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함
  - 전자 회계자료: 대상 업체는 모든 회계 항목을 SAF-PT 형식의 파일로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와 관련한 월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포르투갈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인 e-fatura를 별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부가가치세 자료를 전송하거나, SAF-PT 형태의 파일 혹은 웹포털에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를 제출함<sup>19)</sup>
  - 물품운송문서: 업체는 물품을 운송하기 전 회계 솔루션 등을 통해 포르투갈 세무국에 운송 관련 데이터를 웹으로 실시간 전송할 의무가 있음<sup>20)</sup>
    - 세무국은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류 이동을 허용하는 코드를 발행하고, 기업체의 솔루션은 코드를 자동 수신하여 운송문서에 기록함
  - 전자 회계자료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제출 마감일은 2019년의 경우 계산서 발행일의 익월 15일이며, 2020년부터는 계산서 발행일의 익월 10일임<sup>21)</sup>
- 전자 회계자료 제출 시스템으로는 인증 받은 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포르투갈 세무국은 SAF-PT 파일 생성 기준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무료로

---

Conference, 2019.

18) SAP Help Portal, "Standard Audit Files for Tax Purposes (SAF-T) (Portugal)," <https://help.sap.com/viewer/742bec7aff5a47db960d2c3bf21d3ffe/6.18.11/en-US>, 검색일자: 2020. 1. 5.

19) Autoridade tributaria e aduaneira, *A tool for e-Audit and Compliance*, IOTA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2019.

20) Decree-law No. 198/2012, Portaria No. 160/2013

21) Decree Law No. 28/2019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sup>22)</sup>

- 계산서 소프트웨어가 세무국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잠재적으로 조작을 허용하지 않도록 다음의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문서 서명과 암호화가 가능해야 함
  - 발행된 계산서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과거 일자의 계산서 발행 역시 허용하지 않음
- 인증된 소프트웨어에는 등록번호가 할당되며, 계산서 발급 시 이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세무국으로부터 유효한 자료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인증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300~3,7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3) 표준세무감사파일 관련 지원 시스템

가) e-fatura<sup>23)</sup>

- 포르투갈이 SAF-PT의 도입을 위해 별도로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 혹은 SAF-PT 형식의 파일 제출, 웹포털의 양식을 통한 직접 입력을 통해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계산서와 납품서는 예외 없이 순차적으로 생성되며, 전자 서명 및 관련 데이터와 시스템은 모두 암호화 절차를 거침
- e-fatura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영수증 복권 및 각종 세제 혜택을 운영함
  - 영수증 복권(Fuckura da Sorte)은 납세자 번호가 기재된 모든 적법한 영수증에 쿠폰을 제공하고, 이를 매주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상품 혹은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체 이용 고객으로 하여금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요청을 장려함
    - 10유로마다 1개의 쿠폰이 발행되며, 1주일에 한 번 3만 5천유로, 반기마다 5만유로의

22) SAP Help Portal, "Standard Audit Files for Tax Purposes (SAF-T) (Portugal)," <https://help.sap.com/viewer/742bec7aff5a47db960d2c3bf21d3ffe/6.18.11/en-US>, 검색일자: 2021. 1. 5.

23) 정훈·박하얀·박소현,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p. 42~44.

상금이 지급되는 추첨을 진행함

- e-fatura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자동으로 제공됨

〈표 III-2〉 e-fatura 사용 시 소득공제 혜택

분류	공제 내용
일반비용	• 슈퍼마켓, 의류, 가스, 물, 전기 이용 등에 소요된 총 비용의 35%를 최대 250유로까지 공제함
건강	• 병원, 약제 이용 비용의 15%를 최대 838.44유로까지 공제함
교육	• 모든 수준의 학교 및 훈련, 프로그램 이용 비용의 30%를 최대 760유로까지 공제함
주택	• 임차: 주택 임차 비용의 15%를 최대 502유로까지 공제함 • 이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구매한 자산의 대출 이자 비용의 15%를 최대 209유로까지 공제함
노인	• 노인 부양 비용의 25%를 최대 403.75유로까지 공제함
부가세 환급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 음식, 미용, 동물 관리에 사용한 비용의 매입 부가세 중 15%를 가구당 최대 250유로까지 환급함

자료: 정훈·박하얀·박소현,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44 재인용

나) IES+<sup>24)</sup>

- 포르투갈은 2006년부터 통계청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기업의 데이터를 원스톱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IES 시스템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활용하고 있음<sup>25)</sup>
- 포르투갈의 기업은 IES 제출의 의무를 가지며, IES는 원스톱 제출을 통해 다음의 사항들을 일괄 처리함
  - 상업용 등기소와의 연간 회계 정보 커뮤니케이션

24) 정훈·박하얀·박소현,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p. 44~45.

25) Chumbau, A., H.J. Pereira, and S. Rodrigues, "Simplified Business Information: Impact of Admin Data in the production of Business Statistics," ESS Seminar in Rome, Mar 19, 2010, <https://joinup.ec.europa.eu/collection/egovernment/document/simplified-business-information-portugal-ies>, 검색일자: 2020. 2. 10.

- 세무국에 연간 회계 및 세무 신고
  - 통계청 및 포르투갈 중앙은행에 통계적 자료 처리를 위한 기업의 연간 회계 정보 제공
  - 정보의 제출은 웹페이지 양식이나 XML 형식을 사용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루어짐
- 2019년부터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IES+ 시스템을 마련하여, 세무 신고 시 세무 당국, 중앙은행, 통계자료, 등기소 및 공증인 등의 정보가 통합된 IES 파일이 사전 생성될 수 있게 함<sup>26)</sup>
- (step1) 개별 기업에서 세무 관련 정보가 담긴 SAF-PT 데이터를 제출함
  - (step2) 해당 파일의 정합성을 검증함
  - (step3) 제출된 SAF-PT 내용을 기반으로 재무제표를 비롯한 세무 신고 관련 항목에 대해 IES가 사전 작성함
  - (step4) 납세자는 사전 작성되지 않은 나머지 공란을 작성함

#### 4) OECD 표준안과의 비교

- 포르투갈은 OECD 표준안의 4개 상위 항목인 표제, 마스터파일, 총계정원장 입력값, 원천문서를 모두 포함하나 각 항목 내에서 일부 하위 항목이 제외되거나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포르투갈 표준안을 구성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26) Autoridade tributaria e aduaneira, *A tool for e-Audit and Compliance*, IOTA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2019.

〈표 III-3〉 OECD 표준안 및 포르투갈 표준안 비교

구분	OECD 표준안에서 포함된 항목	OECD 표준안에서 추가한 항목	OECD 표준안에서 제외한 항목
헤더	· OECD 표준안 내 기재된 파일 기본 정보 관련 18개 항목 모두 포함	· 세무 관련 등록번호 · 회계연도 · 회계 시작일 · 회계 종료일	-
마스터파일	· 총계정원장 기본 정보 · 고객 정보 · 공급자 정보 · 과세 정보	-	· 자산정보 · 단위표 · 분석 유형표 · 재고 · 운송 유형표 · 과세 분류사항
총계정원장 입력값	· 입력 항목 번호 · 총수령액 · 총지불액 · 분개(journal) 정보	-	-
원천문서	· 매출내역서 · 물류 이동 · 지불 내역	· 작업문서	· 자산거래 · 매입내역서

자료: Portaria No. 302/2106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sup>27)</sup>

- 포르투갈은 SAF-PT를 도입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관련 보고를 수행하는 방식의 변화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여전히 다음과 같은 도전 사항들에 직면해 있음
  - SAF-PT가 기준을 충족하여 제대로 작성되는지, 작성된 SAF-T가 실제 값을 반영하는지를 보장해야 함
  - SAF-PT 기준이 지속적으로 기업 내 변경 사항과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증가하는 시스템의 복잡성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함

27) ITR, "SAF-T in Portugal, a decade of tax data standardisation," <https://www.internationaltaxreview.com/article/b1f7n1dvdbfyzv/saft-in-portugal-a-decade-of-tax-data-standardisation>, 검색일자: 2021. 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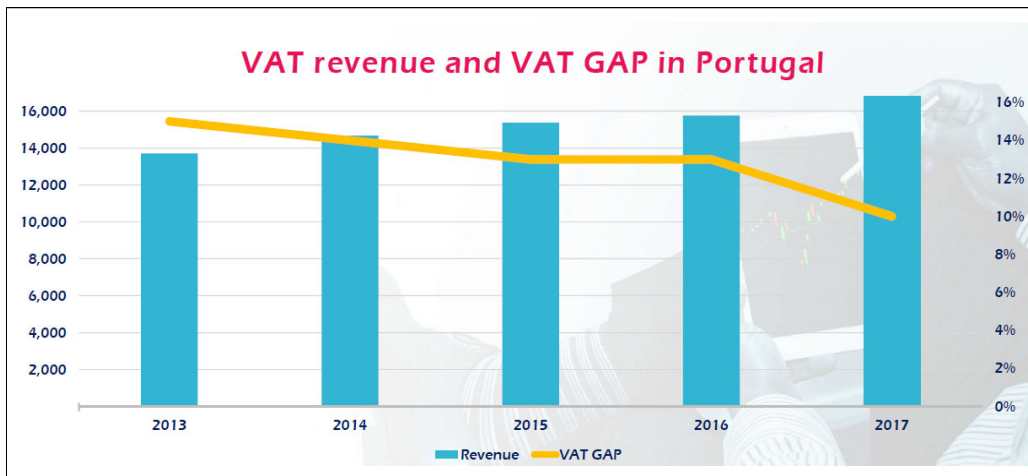
- 이와 함께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 등의 부상에 따라, 정부는 이와 관련한 납세 순응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야 함
  - SAF-PT 작성을 위한 시스템 변경 및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노력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함
    - 기업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세무국 역시 서면 자료를 통한 세무 검증이 종식되면서, 새로운 방법론과 도구, 그리고 IT 기술에 대한 적응이 필요함
  - 각 기업의 시스템이 보유한 대량의 데이터를 SAF-PT 파일에 어떻게 적절하게 매핑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함
  - 본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내부 자원이 제한됨
  - 글로벌 환경 및 현지 상황과 대치되는 관련 그룹 정책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함
- 포르투갈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매출 축소 신고를 줄이기 위해 포르투갈 세무국의 계산서 소프트웨어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
  - 2021년 「주예산법」을 통해 2021년 과세연도 내에 중소기업이 세무 목적으로 SAF-PT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규정함<sup>28)</sup>
  - SAF-PT를 지원하는 계산서 시스템(e-fatura)을 활용하는 경우 추첨을 통한 상금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 SAF-PT를 통해 회사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연간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함으로써, 세무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IES+ 시스템을 구축함
  - 상품 발송 전 운송 관련 정보를 세무국에 제출하게 함

28) PWC, "Portugal Corporate - Tax credits and incentives," <https://taxsummaries.pwc.com/portugal/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검색일자: 2021. 6. 14.

## 라. 효과 및 성과

- 포르투갈 세무국은 2019년 IOTA 연례 회의를 통해 SAF-PT 관련 제도 확장이 이루어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 세수가 약 137억 1천만유로에서 168억 8천만유로까지 증가하고, 납세의무액 대비 부가가치세 gap은 15%에서 10%로 줄어들었다고 밝힘([그림Ⅲ-1] 참조)
- 이후 EU CASE에서 추정된 포르투갈의 2018년 부가가치세 세수는 178억 5천만유로, 부가가치세 gap은 9.6%로 동일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sup>29)</sup>

[그림 Ⅲ-1]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 세수 및 gap 변화(2014~2017년)



자료: Autoridade tributaria e aduaneira, *A tool for e-Audit and Compliance*, IOTA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2019.

- e-fatura를 통해 발급받는 계산서를 통해 제공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sup>30)</sup>

29) CASE -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EU CASE Reports 2020- Study and Reports on the VAT Gap in the EU-28 Member States: 2020 Final Report*, 2020.

30) e-fatura 홈페이지, <https://faturas.portaldasfinancas.gov.pt>, 검색일자: 2021. 4. 6.

- 2013년 약 7억 3천만건이었던 소득공제 적용 대상 계산서 건수는 2019년 약 13억건에 이르고 있음
- 2020년에는 약 12억 4천만건으로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표 Ⅲ-4〉 소득공제 가능 비용에 대해 발행된 계산서 건수

(단위: 건)

연도	소득공제 계산서 건	연도	소득공제 계산서 건
2013	732,369,618	2017	1,035,863,006
2014	677,122,117	2018	1,084,994,882
2015	872,579,534	2019	1,303,087,839
2016	923,949,913	2020	1,237,125,102

자료: e-fatura, <https://faturas.portaldasfinancas.gov.pt>, 검색일자: 2021. 4. 6.

- SAF-PT 내용을 기반으로 재무제표를 비롯한 일부 세무 신고 관련 항목이 사전으로 자동 작성되는 시스템인 IES+가 2019년 도입되어 2020 회계연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는 항목이 2,700개가량 감소할 예정임<sup>31)</sup>

31) NEWCO, "SAF-T: What Changes in 2020?," <https://www.newco.pro/en/blog/saf-t-what-changes-in-2020>, 검색일자: 2021. 4. 7.

## 2. 오스트리아

### 가. 도입 과정<sup>32)</sup>

- 오스트리아는 OECD가 2005년 SAF-T 관련 지침 발표와 함께 표준안을 개발 및 공개함에 따라 2009년 1월 31일 이를 도입함
  - 현재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 전 재무부의 요청 시에만 활용되고 있음<sup>33)</sup>
- 오스트리아는 1998년 「조세변경법(Abgabenänderungsgesetz)」에서 회계 기록 전산화 의무화를 규정하면서 SAF-T 도입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었음
  - 본 법률에 의하면 과세 대상자가 전산화된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보존 가능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이를 파일로 내보내거나 인쇄 및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sup>34)</sup>
  - 「조세변경법」과 관련하여 재무부는 1999년 3월 5일 AÖF1999/76을 통해 시행 및 이행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2000년 7월 3일에는 AÖF 2000/138을 통해 허용되는 파일 형식, 발효 및 이행일, 데이터 캐리어 및 범위, 액세스 권한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한 바 있음
- 2009년 도입 결정 이후 오스트리아 버전의 SAF-T 표준안을 마련함
  - 2009년 3월 16일 OECD의 SAF-T version 1.93을 기반으로 한 SAF-T AT version 1.0을 마련함

32) 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 “Zurverfügungstellung von Daten auf Datenträgern - Standard Audit File-Tax (SAF-T),” <https://www.bmf.gv.at/themen/steuern/fristen-verfahren/bundesabgab-enordnung/standard-audit-file-tax.html>, 검색일자: 2021. 4. 8.

33) Avalara, “Austria SAF-T,” <https://www.avalara.com/vatlive/en/country-guides/europe/austria/austrian-saf-t.html>, 검색일자: 2019. 11. 28.

34) Inkrafttreten der Änderungen der §§ 131 Abs 3 und 132 Abs 3 BAO

## 나. 도입 상세 내용

- 오스트리아 SAF-T 도입의 기본 개념은 범국가적으로 동일한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세 대상자의 모든 회계 관련 원시 자료를 저장하는 것임
  - 이를 통해 과세 대상자 및 세무 당국 간 데이터 교환 비용이 감소하여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기업 내부에서 사전적으로 자체 감사 역시 가능해짐<sup>35)</sup>
  - 부기 기록뿐만 아니라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시스템(POS 시스템, 창고 부기)의 데이터 역시 SAF-T로 세무 당국에 제공될 수 있음<sup>36)</sup>
  
- 2009년 3월 20일 발표한 BMF-010102/0002-IV/2/2009에서 데이터 형식을 OECD 표준안과 동일하게 XML 형식으로 규정함<sup>37)</sup>
  - SAF-T AT version 1.0은 국제 표준이므로 영어 필드명을 유지함
    - 개별 데이터 필드에 대한 설명은 영어와 독일어를 모두 제공하나, OECD version 1.93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영문 설명이 제공되지 않음
  - 오스트리아의 표준안은 현행 OECD 표준안보다 최상위 항목이 두 개 더 추가된 형태임
    - OECD 표준안의 경우 최상위 항목이 네 개(헤더, 마스터파일, 총계정원장, 원천자료)이나, 오스트리아 표준안은 OECD 표준안에 마스터파일의 하위 항목들 중 재고 (physical stock)와 자산(assets)을 별도로 분리하여 추가로 상위에 배치함
  - XML 외 추가적인 데이터 형식 역시 허용함으로써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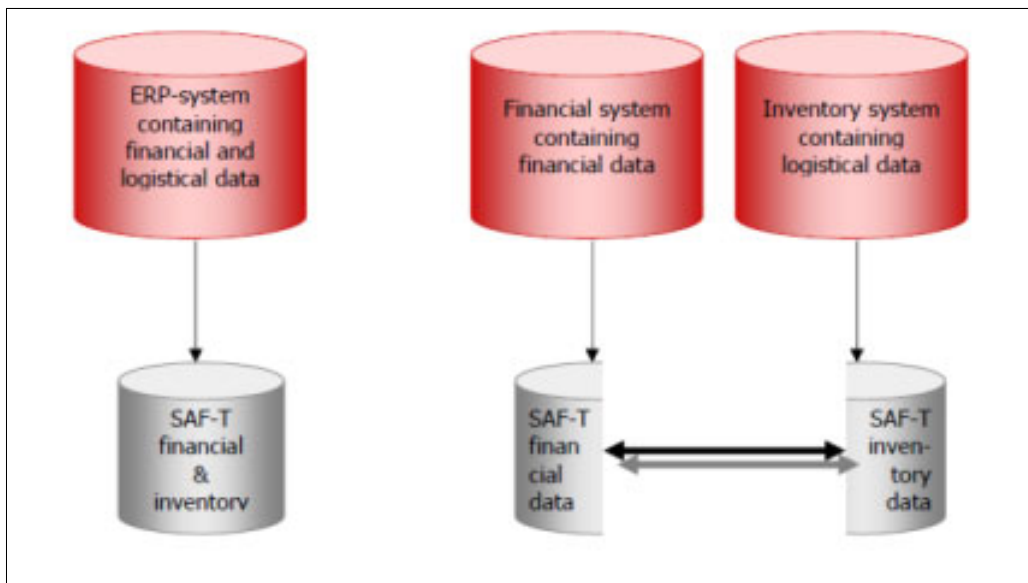
35) Majdanska, A. and K. DziwinskiAlica, "The Potential of a Standard Audit File- Tax in the European Union: A Chance for Coordinateed VAT Administration?,"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IBFD, Vol. 72, No. 10, 2018.

36) 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 "Amtliche Veröffentlichungen," <https://findok.bmf.gv.at/findok?execution=e2s1>, 검색일자: 2020. 11. 28.

37) 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 "Zurverfügungstellung von Daten auf Datenträgern - Standard Audit File-Tax (SAF-T)," <https://www.bmf.gv.at/themen/steuern/fristen-verfahren/bundesabgab-enordnung/standard-audit-file-tax.html>, 검색일자: 2021. 4. 8.

- 오스트리아의 경우 ERP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별 회계 및 물류시스템의 조합을 통해서도 SAF-T 파일을 생성할 수 있으며, SAF-T의 세부 하위 항목들로 여러 서브 파일을 별도 구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함<sup>38)</sup>([그림 III-2] 참조)

[그림 III-2] 오스트리아 SAF-T의 이원화된 구조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 *Standard Audit File-Tax Handbuch*, Mar 16, 2009, p. 3.

38) 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 *Standard Audit File-Tax Handbuch*, Mar 16, 2009.

### 3. 프랑스

#### 가. 도입 과정

- 프랑스는 SAF-T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전자로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측면에서 FEC(Fichier d'Ecritures Comptables)가 존재하며, 적용 대상 기업은 세무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함<sup>39)</sup>
- FEC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발행한 전산 회계항목 파일로, 해당 회계연도 동안 작성된 부기와 관련한 모든 데이터 및 항목을 포함함
  - 프랑스 국가 회계 차트인 Plan Comptable Général에 근거하여 마련되어 OECD 표준과는 차이가 존재함<sup>40)</sup>
- 2012년 FEC도입 관련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입됨<sup>41)</sup>
- 프랑스의 「세금절차법(Livres des Procédures Fiscales)」 L.47A I에 FEC 관련 내용이 규정되었으며, 세무조사 시 회계기록 파일이나 각 회계 항목에 대해 18개의 필드가 기재된 FEC 파일을 세무 당국에 제출할 수 있음<sup>42)</sup>

39) SNI, "SAF-T France," <https://www.snitechnology.net/en/saft-france.html>, 검색일자: 2021. 1. 15.; KPMG, "Un outil au service de l'administration en cas de contrôle fiscal?," <https://www.kpmg-pulse.fr/le-fichier-des-ecritures-comptables-un-outil-au-service-de-ladministration-en-cas-de-controle-fiscal>, 검색일자: 2021. 4. 5.

40) Avalara, "France SAF-T," <https://www.avalara.com/vatlive/en/country-guides/europe/france/french-saf-t.html>, 검색일자: 2020. 1. 8.

41) Deloitte - Tax@Hand, "FTA Guidelines on file of accounting entries (FEC)," <https://www.taxathand.com/article/1236/France/2014/FTA-Guidelines-on-file-of-accounting-entries-FEC>, 검색일자: 2020. 1. 8.

42) SNI, "SAF-T France," <https://www.snitechnology.net/en/saft-france.html>, 검색일자: 2020. 1. 15.

## 나. 도입 상세 내용

### 1) 대상

- 전산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는 법인세 납부 기업 및 BIC,<sup>43)</sup> BNC<sup>44)</sup> 또는 BA<sup>45)</sup>로 분류되는 소득세 납부 기업들은 FEC 제출 의무가 있음<sup>46)</sup>
- 프랑스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외국 기업이라도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무 당국의 요청 시 FEC 파일을 제출함
  - 외국에 본사를 둔 프랑스의 지사의 경우 프랑스의 「상업법」에 따라 법적 성격이 없어 본사와 독립적인 회계를 가질 수 없으므로 본사의 FEC를 제출함<sup>47)</sup>
- FEC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은 세무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파일을 세무조사관과의 첫 대면 시 현장 제공해야 함<sup>48)</sup>
  - FEC 보고는 세무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 사항이 아님
- 세무 조사관에게 FEC 파일을 제공하지 않거나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기각될 수 있음<sup>49)</sup>
  - 이때 세무 당국은 임의로 기업의 이윤과 매출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책임이 됨<sup>50)</sup>

43) 공예 및 예술 관련 상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

44) 프리랜서 및 기타 비영리 활동으로 인한 수익

45) 농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

46) Legalstart.fr, “Fiscalite-entreprises (micro-big),” <https://www.legalstart.fr/fiches-pratiques/fiscalite-entreprises/micro-bic>, 검색일자: 2020. 1. 14.

47) Deloitte - Tax@Hand, “The File of accounting entries (FEC) of,” <https://www.taxathand.com/article/1235/France/2014/The-File-of-accounting-entries-FEC-of>, 검색일자: 2020. 1. 14.

48) Compta Facile, “Le fichier des écritures comptables,” <https://www.compta-facile.com/fichier-des-ecritures-comptables-fec-definition-contenu-utilite>, 검색일자: 2020. 1. 14.

49) Le Coin des Entrepreneurs, “Le fichier des écritures comptables(FEC): ce qu’il faut savoir,” <https://www.lecoindesentrepreneurs.fr/fichier-des-ecritures-comptables>, 검색일자: 2020. 1. 15.

- 회계 조사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FEC 파일을 전송하지 않을 경우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과태료가 부과됨
  - 5천유로 또는 세무 당국이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됨

2) 신고 방식

- FEC는 CD, DVD, USB 메모리, 외장 하드드라이브 등 다양한 물리적 매체를 통해 제출 가능함<sup>51)</sup>
- FEC는 해당 회계연도의 모든 회계 데이터 및 항목들은 시간 및 유효성 검사 순서대로 정렬하여 단일 파일로 제출됨<sup>52)</sup>
  - 다층으로 구성된 OECD의 XML 스키마와는 달리 FEC는 18개의 단층 필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텍스트 파일(TXT) 형식으로 작성됨

〈표 III-5〉 프랑스의 FEC 데이터 구조

정보	필드명
1. 항목 기입 코드	JournalCode
2. 회계 항목의 분개	JournalLib
3. 회계 항목의 연번	EcritureNum
4. 회계 분개 전기일	EcritureDate
5. 계좌 번호	CompteNum
6. 프랑스 회계 차트의 명명법에 따른 계정 설명	CompteLib

50) Manupard, "New FEC File," <https://www.maupard.com/new-fec-file>, 검색일자: 2020. 1. 15.

51) 상동

52) Livres des Procédures Fiscales L.47A I

〈표 III-5〉의 계속

정보	필드명
7. 보조 계좌번호(없을 시 공란)	CompAuxNum
8. 보조 계좌번호에 대한 설명(없을 시 공란)	CompAuxLib
9. 증빙 서류 출처	PieceRef
10. 증빙 서류 일자	PieceDate
11. 회계 분개의 문구	EcritureLib
12. 지출 금액 <sup>1)</sup>	Debit
13. 여신 금액 <sup>1)</sup>	Credit
14. 회계 분개의 문자(없을 시 공란)	EcritureLet
15. 회계 분개 문자 작성 날짜(없을 시 공란)	DateLet
16. 회계 분개 승인일	ValidDate
17. 금액(없을 시 공란)	Montantdevisé
18. 통화 단위(없을 시 공란)	Idevisé

주: 1) 회사의 전산 회계 시스템에 12 및 13번 항목의 débit 및 crédit 정보가 없으면 각각 montant (amount) 및 sens(direction)로 바꿀 수 있음

자료: Livres des Procédures Fiscales L.47A I

## 4. 스페인

### 가. 도입 과정<sup>53)</sup>

- 최근 다수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세정 전반을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했고, 그 일환으로 탈세에 대한 선제적 솔루션의 전자 송장 및 전자 VAT보고 시스템을 도입함
  - 멕시코, 칠레, 브라질, 페루 등과 같은 국가에서 VAT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유럽은 이러한 과정을 분석함
    - 그 결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탈세를 줄이기 위해 자체 전자 송장 및 전자 VAT 보고 규정을 도입했고 2017년 스페인은 VAT 관련 정보의 전자보고에 대한 자체 규정인 SII(Suministro Inmediato de Información del IVA - VAT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공급) 원칙을 도입함
    - SII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는 2016년 12월 2일 스페인 왕실 법령 596/2016을 통해 수립되고 법적 행위, 특히 스페인 VAT 규정( RD 1624/1992 )에 특정 규정이 도입됨
- 스페인 SII 규정은 2017년 7월 1일 에 발효됨
  - 스페인은 세금 징수를 극대화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화를 채택한 라틴 아메리카의 전자 송장 모델을 채택한 유럽에서의 첫 번째 사례임
    - 스페인의 사례 이전에도 폴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프랑스 및 리투아니아와 같은 다른 유럽 회원국은 정기적인 전자 VAT 보고를 위한 SAF-T (표준 세무 감사 파일)를 도입했지만 실시간 보고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는 스페인이 유일함

---

53) Pikon, "vat-reporting," <https://www.pikon.com/en/sii-spain-sap-document-compliance-b2b-vat-reporting/>, 검색일자: 2021. 4. 9.

## 나. 도입 상세 내용

- 스페인은 2017년 SII 도입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GAP을 줄이기 위해 SAF-T와 SII를 도입하였고, 2021년 현재도 다른 분야에의 적용은 배제하고 있음<sup>54)</sup>
- SII는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실시간으로 스페인 세무 당국(AEAT)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납세자에게 한정되어 의무가 부과됨<sup>55)</sup>(SII 사용 의무가 없는 납세자 또한 자발적으로 SII를 통한 부가가치세 정보 제출이 가능함)
  - REDEME에 등록되어 한 달 단위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연간 매출이 6,010,121.04유로 이상인 대기업
  - 스페인의 부가가치세 그룹에 속한 조직
- SII를 통한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 전송 시에는 네 개의 주요 회계 장부 원장을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스페인 세무국의 AEAT E-Office에 보고해야 함<sup>56) 57)</sup>

54) Agencia Tributaria “1.1. What is the Immediate Supply of Information (SII)?,” [https://www.agenciatributaria.es/AEAT.internet/en\\_gb/Inicio/Ayuda/Modelos\\_Procedimientos\\_y\\_Servicios/Ayuda\\_P\\_G417\\_IVA\\_Llevanza\\_de\\_libros\\_registro\\_SII/Informacion\\_general/Preguntas\\_frecuentes/1\\_Cuestiones\\_generales/1\\_1\\_Qu\\_e\\_es\\_el\\_Suministro\\_Inmediato\\_de\\_Informacion\\_SII\\_.shtml](https://www.agenciatributaria.es/AEAT.internet/en_gb/Inicio/Ayuda/Modelos_Procedimientos_y_Servicios/Ayuda_P_G417_IVA_Llevanza_de_libros_registro_SII/Informacion_general/Preguntas_frecuentes/1_Cuestiones_generales/1_1_Qu_e_es_el_Suministro_Inmediato_de_Informacion_SII_.shtml), 검색일자: 2021. 4. 5.

55) Agencia Tributaria “1.3. Does the Immediate Supply of Information (SII) affect all VAT taxpayers?,” [https://www.agenciatributaria.es/AEAT.internet/en\\_gb/Inicio/Ayuda/Modelos\\_Procedimientos\\_y\\_Servicios/Ayuda\\_P\\_G417\\_IVA\\_Llevanza\\_de\\_libros\\_registro\\_SII/Informacion\\_general/Preguntas\\_frecuentes/1\\_Cuestiones\\_generales/1\\_3\\_Afecta\\_el\\_SII\\_a\\_todos\\_los\\_sujetos\\_pasivos\\_del\\_IVA\\_.shtml](https://www.agenciatributaria.es/AEAT.internet/en_gb/Inicio/Ayuda/Modelos_Procedimientos_y_Servicios/Ayuda_P_G417_IVA_Llevanza_de_libros_registro_SII/Informacion_general/Preguntas_frecuentes/1_Cuestiones_generales/1_3_Afecta_el_SII_a_todos_los_sujetos_pasivos_del_IVA_.shtml), 검색일자: 2021. 4. 5.

56) Agencia Tributaria “1.10. What are the basics of the functioning of SII?,” [https://www.agenciatributaria.es/AEAT.internet/en\\_gb/Inicio/Ayuda/Modelos\\_Procedimientos\\_y\\_Servicios/Ayuda\\_P\\_G417\\_IVA\\_Llevanza\\_de\\_libros\\_registro\\_SII/Informacion\\_general/Preguntas\\_frecuentes/1\\_Cuestiones\\_generales/1\\_10\\_Cuales\\_son\\_las\\_lineas\\_basicas\\_de\\_funcionamiento\\_del\\_SII\\_.shtml](https://www.agenciatributaria.es/AEAT.internet/en_gb/Inicio/Ayuda/Modelos_Procedimientos_y_Servicios/Ayuda_P_G417_IVA_Llevanza_de_libros_registro_SII/Informacion_general/Preguntas_frecuentes/1_Cuestiones_generales/1_10_Cuales_son_las_lineas_basicas_de_funcionamiento_del_SII_.shtml), 검색일자: 2021.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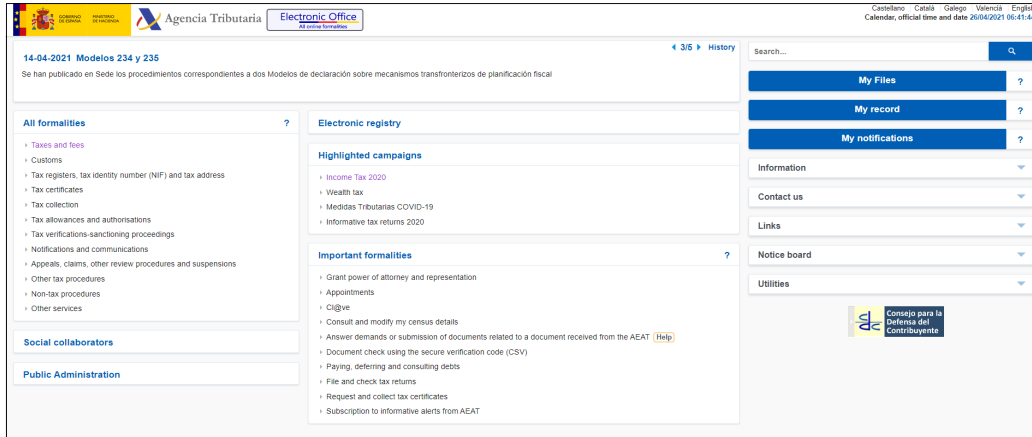
57) Agencia Tributaria “1.12. When do you have to send invoicing records to the Tax Agency?,” [https://www.agenciatributaria.es/AEAT.internet/en\\_gb/Inicio/Ayuda/Modelos\\_Procedimientos\\_y\\_Servicios/Ayuda\\_P\\_G417\\_IVA\\_Llevanza\\_de\\_libros\\_registro\\_SII/Informacion\\_general/Preguntas\\_frecuentes/1\\_Cuestiones\\_generales/1\\_12\\_Cuando\\_hay\\_que\\_enviar\\_los\\_registros\\_de\\_facturacion\\_a\\_la\\_AEAT\\_.shtml](https://www.agenciatributaria.es/AEAT.internet/en_gb/Inicio/Ayuda/Modelos_Procedimientos_y_Servicios/Ayuda_P_G417_IVA_Llevanza_de_libros_registro_SII/Informacion_general/Preguntas_frecuentes/1_Cuestiones_generales/1_12_Cuando_hay_que_enviar_los_registros_de_facturacion_a_la_AEAT_.shtml), 검색일자: 2021. 4. 5.

- 국내 판매, 지역 내 판매 및 수출과 같은 판매 거래를 보고하기 위한 발신 송장(LRFE)
  - 통상적인 경우 인보이스 발행 후 4일 이내 전송
    - 수령인 또는 제3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의 경우 8일 이내 전송
  - 국내 구매, EU 회원국 내 구매 및 수입과 같은 구매 거래를 보고하기 위한 수신 송장 (LRFR)
    - 회계 시스템에 들어간 후 달력으로 4일 이내 전송
  - EU 커뮤니티 내 거래 장부(LRDOI)
    - 발송 또는 운송 일로부터 4일 이내
  - 투자자산에 대한 정보(LRBI)
    - 해당 연도의 마지막 결산 제출 기간 이내(1월 30일까지)
- SII에 대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과 같음<sup>58)</sup>
- 무신고: 연간 매출액의 1%(최소 금액은 600유로)
  - 지연신고: 누락 된 금액의 0.5%(분기당 최소 300유로 및 최대 6천유로)
  - 과소신고 및 신고 내용에 대한 오류: 잘못 보고된 데이터의 1%(최소 150유로 및 최대 6천유로)
  - EU 커뮤니티 내 거래 장부 및 투자 상품 장부의 오류 또는 누락: 고정 벌금 150유로
- SII는 기본적으로 실시간 세무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요 회계 장부별 제출 기한이 규정되어 있음
- 신고 방식은 ERP에서 생성된 XML 양식의 파일을 스페인 세무국의 AEAT E-Office에 보고하는 것으로 함

---

58) MAROSA "Penalties on Spanish SII start applying," <https://marosavat.com/penalties-on-spanish-sii-start-applying/>, 검색일자: 2021. 4. 21.

[그림 III-3] AEAT의 E-Office



자료: AEAT 신고서 제출 홈페이지, “E-Office,” [https://www.agenciatributaria.gob.es/AEAT.sede/en\\_gb/Inicio/Inicio.shtml](https://www.agenciatributaria.gob.es/AEAT.sede/en_gb/Inicio/Inicio.shtml), 검색일자: 2021. 4.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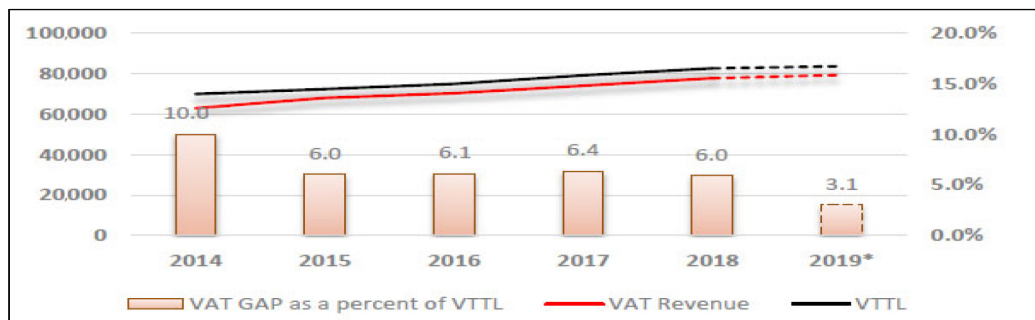
- 스페인 조세국(AEAT)은 VAT 신고 및 환급을 위해 사전 기입 서비스 - Pre303. Un servicio para todos(Pre-303. 모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sup>59)</sup>
  - 해당 서비스는 VAT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체 평가 보고서 ‘양식 303’에 대해서 미리 채워진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임
  - 정보 공급 시스템(SII) 및 월간 환급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특별 VAT 제도에 따라 과세되지 않은 매출액이 600만유로 미만의 납세자에게 2020년에 먼저 시행되었으며, 2021년 2월부터 모든 VAT 납세자에게 적용이 확대됨
    - 사전 기입 서비스의 확대는 350만 납세자들이 미리 채워진 보고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4만 1천명의 SII 납세자와 60만명의 부동산 임대인이 완전히 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받을 수 있게 함
- 2017년 실시 이후 지속적인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자본재에 대한 취득과 후속 기간에 공제할 송장을 식별하는 송장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위탁 판매자를 위한 별도의 판매 신고서인 위탁판매 신고서를 시스템 내에 도입함

59) IOTA, “The Spanish Tax Agency (AEAT) takes a step forward to the pre-filled VAT return,” <https://www.iota-tax.org/news/spanish-tax-agency-aeat-takes-step-forward-pre-filled-vat-return>, 검색일자: 2021. 4. 21.

다. 효과

- VAT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획득 가능
  - 시스템 특성상 납세자가 세무 기관 온라인 시스템에서 파일링된 비교 가능한 재정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월별 VAT 환급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정보를 비교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납세자는 제출된 신고서에서 존재하는 오류를 세무 기관의 요구가 있기 전에 수정할 수 있고 VAT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감소함
  
- 스페인의 SII는 특정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 송장 또는 데이터 등 다양한 사항을 요청하기 때문에 세무 기관의 추가적인 정보 요구 사항을 줄임
  
- 전통적인 VAT 기록 장부를 유지하는 방법을 현대화하고 표준화함과 동시에 그러한 형식적 자료 및 양식 347, 340 및 390의 제출 의무를 제거함
  
- 정기 부가가치세 자체 평가 기간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해 10일 연장된 기한을 적용받게 됨
  
- 2017년 SII 도입을 통해 스페인 세무국은 부가가치세 GAP의 감소를 의도하였고, 2019년 3.1%의 감소된 VAT GAP을 보이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가 SII의 결과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함

[그림 III-4] 스페인의 2014~2019 VAT GAP 동향



자료: EU, "Study and Reports on the VAT Gap in the EU-28 Member States: 2020 Final Report," 2020 Final Report, 2020, p. 38.

## 5. 폴란드

### 가. 도입 과정

- 폴란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SAF-T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합하여 JPK\_VAT(finalne wersje struktur)로의 전환을 2016년 최초 도입·공개 후 진행하여 왔음
  - 2016년 JPK의 도입을 공개한 폴란드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2018년부터 이를 전면 적용하였으며,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JPK-VAT로 대체하겠다고 공개한 이후 계속적으로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음
  - 최초 도입 시 5천만유로의 연매출 또는 2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또는 재무제표의 총자산이 4,300만유로 이상인 대기업 납세자에게만 JPK\_VAT 파일의 제출 의무가 있었으나, 2018년 7월 1일부터 직원이 9인 이상이거나 연매출 200만유로 이상인 납세자에게까지 JPK\_VAT 파일의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sup>60)</sup> 2020년부터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함<sup>61)</sup>
  - 2019년 개정안을 통해 SAF-T와 부가가치세 신고의 JPK\_VAT로 완전한 대체를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함<sup>62)</sup>
    - 기존 2019년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납세자의 경우 2020년 4월 1일, 이 외의 납세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이 외의 납세자의 경우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되었고 해당일 시행함
- JPK 신고방식을 최초 적용 시 2016년 폴란드 정부는 Aplikacje Krytyczne Sp. z o.o.(Critical Applications Ltd)<sup>63)</sup> 라는 폴란드 재무부 소속 회사를 설립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자들의 잔고, JPK, 환급자 들을 분석함<sup>64)</sup>

60) Indirect Tax Reporting Trends, "SAP AND SAF-T POLAND," <https://globalindirecttaxmanagement.com/thought-leadership-publications/chapter-2-building-blocks-of-an-indirect-tax-strategic-plan-4/sap-and-saf-t-poland.html>, 검색일자: 2021. 5. 12.

61) 폴란드 국세청, "JPK\_VAT z deklaracja," <https://www.podatki.gov.pl/jednolity-plik-kontrolny/jpk-vat-z-deklaracja/jpk-vat-z-deklaracja-info>, 검색일자: 2021. 5. 3.

62) 폴란드 국세청, "Podpisano rozporządzenie ws. nowego JPK\_VAT," <https://www.podatki.gov.pl/jednolity-plik-kontrolny/jpk-vat-z-deklaracja/jpk-vat-z-deklaracja-info>, 검색일자: 2021. 5. 3.

63) Akmf 공식 홈페이지, <https://www.akmf.pl/>, 검색일자: 2021. 5. 14.

- 해당 회사는 JPK Analyser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빅데이터를 활용해 납세자와 그 계약자의 JPK를 분석하고 폴란드와 기타 EU 국가에서 제거된 부가가치세 납세자를 식별함. 이러한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탈세자를 색출하고, 해당 경영자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되어 신고한 사항을 수정하게 함

#### 나. 도입 상세 내용<sup>65)</sup>

- 폴란드의 SAF-T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도입되었고, 현재 거의 대부분의 폴란드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JPK\_VAT 양식으로 매출·매입 양식을 제출하고 있음
  - 매월 신고 납부하는 일반적인 납세자의 경우 JPK\_V7M, 소규모 납세자로서 분기별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JPK\_V7K 양식으로 전자 신고함
  -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JPK 양식으로 신고하지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으로 신고함<sup>66)</sup>
    - VAT-12: 정액세로 과세되는 개인 택시 서비스
    - VAT-8: VAT 납부자 이외의 납세자에 의한 ICA<sup>67)</sup>
    - VAT-10: 새로운 교통 수단의 ICA
    - VAT-14: 자동차 연료의 ICA
-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면세 활동만 수행하는 객관적<sup>68)</sup> 면세자와 주관적<sup>69)</sup> 면세자, 사업활동을 중단한 자는 JPK를 제출하지 아니함<sup>70)</sup>

64) Polish Economic Institute - Reducing the VAT gap : lessons from Poland

65) 폴란드 정부 기업가 운영 지원 관련 정보, “Złożenie deklaracji VAT,” [https://www.biznes.gov.pl/pl/firma/podatki-i-ksiegowosc/chce-rozliczac-vat/proc\\_94-deklaracja-vat](https://www.biznes.gov.pl/pl/firma/podatki-i-ksiegowosc/chce-rozliczac-vat/proc_94-deklaracja-vat), 검색일자: 2021. 5. 3.

66) 폴란드 정부 기업가 운영 지원 관련 정보, “Jak składać JPK\_VAT z deklaracją,” <https://www.biznes.gov.pl/pl/firma/podatki-i-ksiegowosc/chce-rozliczac-vat/jak-skladac-jpk-vat-z-deklaracja>, 검색일자: 2021. 5. 3.

67) Intra Community Acquisition-EU 회원국 간 역내거래의 취득에 대해 VAT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

68) 부가가치세 면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69) 전 과세 연도의 총매출액이 20만즈위터를 초과하지 않는 자

70) 폴란드 정부 기업가 운영 지원 관련 정보, “Jak sk ł adać JPK\_VAT z deklaracją,” <https://www.biznes>.

- 사업 활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신고와 함께 JPK\_VAT 제출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ICA가 적용되는 경우의 매입자
  - VAT 납부자로서 서비스 또는 소비재를 수입하는 경우
  - 정산 기간 중 영업 활동 정지가 적용되지 않은 기간
  - 정지 기간 중 과세활동에 대해 세금을 정산할 의무가 있고 매입세금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세무 당국은 SAF-T를 세무감사, 활동 확인, 세관 및 세금 관리, 세금 절차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해 납세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sup>71)</sup>
  - 세무 당국이 위의 항목을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JPK 구조의 경우 3일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정당한 경우(예: 많은 양의 데이터, 책임자 부재) 세무 당국에 이 기한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지정된 기간 내에 SAF-T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2,800즈워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는 세금 장부 또는 문서를 보관 또는 보관하도록 위임한 사람(예: 회계 사무소)에게 부과될 수 있음
    - 고의로 SAF-T 형식의 데이터 제출을 회피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 세무감사 등의 사유로 별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의 특정 기간 동안의 VAT 기록에 따른 구매 및 판매에 대한 정보 세트, VAT-7 신고서 항목, 결제의 정확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추가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과는 별도의 추가적인 JPK를 보내야 함
    - 요청 시 JPK는 회계 장부(JPK\_KR), 은행 명세서(JPK\_WB), 물류(JPK\_MAG),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명세서(JPK\_FA), 농업에 적용되는 단일 세율 명세서(JPK\_FA\_RR), 세입 및 비용의 세금 장부(JPK\_PKPIR), 수익 기록(JPK\_EWP)이 포함됨

gov.pl/pl/firma/podatki-i-ksiegowosc/chce-rozliczac-vat/jak-skladac-jpk-vat-z-deklaracja, 검색일자: 2021. 5. 3.

71) 폴란드 국세청, “JPK na żądanie,” <https://www.podatki.gov.pl/jednolity-plik-kontrolny/jpk-na-zadanie/>, 검색일자: 2021. 5. 3.

- 요청 시 JPK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무료 JPK 2.0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JPK를 생성하고 전송하거나, USB 플래시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CD/DVD 또는 기타 데이터 매체 또는 특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송할 수 있고 업데이트된 회계 소프트웨어 또는 상업용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음. JPK\_FA 구조에 한해 e-microfirm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sup>72)</sup>
- USB 플래시 드라이브 등의 기록매체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나 이메일로 요청 시 JPK 파일을 제출할 수 없음
  
- 통상의 신고기간의 경우 매달 신고·납부하는 방식과 분기별 신고·납부하는 방식 모두 해당 과세기간 다음 달의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음
  
- 납세자는 JPK\_VAT 파일 제출에 대해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e-microfir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JPK 파일을 생성하고 전송하는 방법,<sup>73)</sup> 재무부의 웹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기존의 회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JPK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JPK 파일 없이 홈페이지 신고를 통해 JPK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e-microfir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재무부에 로그인 해야 하며, JPK 파일을 생성 및 전송할 뿐만 아니라 세금명세서 또한 발행하고 저장할 수 있음

#### 다.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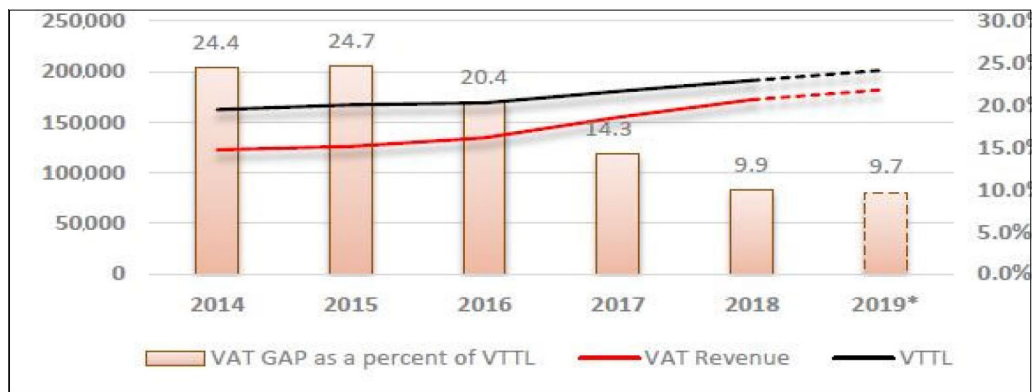
- 납세자는 첨부파일과 별도의 JPK\_VAT 정보가 포함된 별도의 VAT-7 또는 VAT-7K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두 가지 의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하나의 JPK\_VAT 파일을 전송함. 따라서 첨부파일과 VAT 신고 파일을 두 번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UPO (납세확인서)를 두 번 기다릴 필요가 없음

72) 폴란드 국세청, “W jaki sposób można przekazać JPK na żądanie?,” <https://www.podatki.gov.pl/jednolity-plik-kontrolny/pytania-i-odpowiedzi/jpk-na-zadanie/w-jaki-sposob-mozna-przekazac-jpk-na-zadanie/>, 검색일자: 2021. 5. 3.

73) 폴란드 정부, “Nowa wersja aplikacji e-mikrofirma do składowania JPK\_VAT z deklaracją,” <https://www.gov.pl/web/kas/nowa-wersja-aplikacji-e-mikrofirma-do-skladania-jpkvat-z-deklaracja>, 검색일자: 2021. 5. 3.

- 세무감사 및 절차 횟수가 줄어들고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단축됨
- 각 VAT 정산은 납세자의 개입 없이 보고된 납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비교하여 자동으로 확인됨
- 폴란드의 부가가치세 GAP은 SAF-T 2016년 도입 시기부터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부가가치세 GAP의 감소가 실제 부가가치세 세목에 대한 SAF-T도입에 의한 것인지는 실증적인 분석과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그림 III-5] 폴란드 VAT GAP 변화(2014~2019년)



자료: EU, Study and Reports on the VAT Gap in the EU-28 Member States: 2020 Final Report: 2020 Final Report, 2020, p. 52.

- 최근 폴란드 국세청(KAS)은 JPK 및 STIR(Teleinformatic System of the Clearing House) 분석을 통해 폴란드 의류 생산자들과 외국 기업 간 신뢰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명세서 교환을 발견하여 150만즈워티의 세수를 확보함<sup>74)</sup>
  - 탈세 혐의의 포착을 통해 회사의 소유주와 11명의 증인을 면담하고 재무 및 회계 문서를 확보하고 3개의 가짜 사업장과 5개의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다투, 직조 및 원사 창고를 발견함

74) 폴란드 정부, "Kolejny sukces analityki JPK i STIR," <https://www.gov.pl/web/kas/kolejny-sukces-analityki-jpk-i-stir>, 검색일자: 2021. 5. 3.

## 6. 노르웨이

### 가. 도입 과정

- 노르웨이 국세청은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회계정보 수집 및 공유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2016년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하는 SAF-T Financial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SAF-T 적용 대상 기업은 세무당국의 요청 시 표준화된 XML 형식의 회계정보를 제출을 의무화함<sup>75)</sup>
  - SAF-T Financial은 2014년부터 국세청, 노르웨이 공인회계사 협회, 노르웨이 회계사 협회 등이 협력하여 작성한 결과물임<sup>76)</sup>
  -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기업의 SAF-T Financial의 도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짐
  -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 대상 기업들은 2020년 4월 10일(첫 번째 VAT 신고 마감일)까지 1분기 SAF-T 회계 파일을 Altinn에 제출해야 되나,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하여 SAF-T 파일 구현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함<sup>77)</sup>
    -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연장이 불가능함
    - Altinn은 노르웨이의 기업 및 개인의 전자 회계 기록 장부(electronic dialogue) 제출 플랫폼임<sup>78)</sup>
  
- SAF-T의 적용은 노르웨이 「회계법」 제13조 b항 및 2017년 12월 신설된 「회계규정」 제7~8조를 근거로 함<sup>79)</sup>

75) 노르웨이 국세청, "Questions and answers - SAF-T Financial,"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start-and-run/rutiner-regnskap-og-kassasystem/saf-t-financial/questions-and-answers---saf-t-financial/>, 검색일자: 2021. 3. 15.

76) Sovos, "Norway to Mandate SAF-T Reporting from 2020," December 12, 2019, <https://sovos.com/blog/2019/12/12/norway-to-mandate-saf-t-reporting-from-2020>, 검색일자: 2021. 5. 12. page\_view.pdf

77) 노르웨이 국세청, "Prinsipputtalelse - SAF-T regnskapsfil," <https://www.skatteetaten.no/rettskilder/type/uttalelser/prinsipputtalelser/saf-t-regnskapsfil/>, 검색일자: 2021. 4. 7.

78) 노르웨이 온라인 공공서비스 가이드, "Altinn," <https://www.norge.no/en/service/altinn>, 검색일자: 2021. 4. 7.

- 전자 제공되는 회계 정보는 「회계법」 제13조 b항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년 6개월 동안 제공 가능함
  - 「회계규정」 제7~8조에 따라 회계 정보는 표준화된 형태로 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세무당국은 요구 사항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음
- 2022년 1월 1일부터는 노르웨이 세무당국의 VAT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SAF-T 코드를 기반으로 한 VAT 신고가 이루어지며, 2021년 3분기 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임<sup>80)</sup>
- 기존의 VAT 신고는 Altinn에서 수동으로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VAT 신고는 ERP 시스템에서 직접 이루어지므로 Altinn에 보고할 필요가 없음
    - 보고 시 31개의 표준화된 SAF-T 코드가 사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변동이 있는 SAF-T 코드만 보고하면 됨
    - 새로운 VAT 신고 시 세무당국은 부실채권, VAT 수정·취소신고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음

79) 노르웨이 국세청, “Dispensasjon fra kravet til å giengi elektroniske opplysninger i standardisert form (SAF-T regnskap),” <https://www.skatteetaten.no/rettskilder/type/uttalelser/prinsipputtalelser/dispensasjon-fra-kravet-til-a-giengi-elektroniske-opplysninger-i-standardisert-form-saf-t-regnskap/>, 검색일자: 2021. 3. 15.; bokføringsloven § 13, <https://lovdata.no/dokument/NL/lov/2004-11-19-73/%C2%A716#%C2%A716>, 검색일자: 2021. 4. 7.; bokføringsforskriften § 7-8, <https://lovdata.no/dokument/LTI/forskrift/2017-12-22-2387>, 검색일자: 2021. 4. 7.

80) 노르웨이 국세청, “Modernising our VAT systems,”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vat-and-duties/vat/modernising-our-vat-systems/>, 검색일자: 2021. 4. 8.  
 PWC, “Nye krav til mva-melding fra 1. januar 2022,” <https://blogg.pwc.no/skattebloggen/nye-krav-til-mva-melding-fra-1.-januar-2022>, 검색일자: 2021. 4. 7.  
 KPMG, “A new digital VAT return,” <https://home.kpmg/no/nb/home/nyheter-og-innsikt/2021/01/a-new-digital-vat-return.html>, 검색일자: 2021. 4. 7.  
 SOVOS, “Norway’s New 2022 VAT Return: Detailed and Digital,” <https://sovos.com/blog/2021/03/30/norways-new-2022-vat-return-detailed-and-digital/>, 검색일자: 2021. 4. 7.  
 Deloitte, “New digital VAT reporting from 2022,” <https://www.taxathand.com/article/16052/Norway/2021/New-digital-VAT-reporting-from-2022>, 검색일자: 2021. 4. 7.  
 노르웨이 국세청, “Business rules,” <https://skatteetaten.github.io/mva-meldingen/english/forretningsregler/#business-rules-for-the-vat-tax-return>, 검색일자: 2021. 4. 12.

- 또한 매출·매입 관련 거래의 주기적인 전자 보고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재무부의 검토 단계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거래 수준의 매출·매입 인보이스 정보가 보고될 수 있음(예: 거래 상대자, 날짜, 인보이스 번호, VAT를 포함한 금액 정보 등)

## 나. 도입 상세 내용

- 노르웨이의 SAF-T Financial 적용 대상기업은 전자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나, 연간 600개 미만의 바우처(voucher)를 보유하거나 연매출액이 500만 노르웨이크로네 미만인 기업은 SAF-T Financial 적용 의무가 없음
  - 연매출액이 500만노르웨이크로네 미만인 기업은 회계정보를 전자 기록할 의무가 없음
- 세무당국 요청 시 SAF-T 적용 대상 기업은 Altinn을 통하여 제출함
  - SAF-T Financial 파일은 XML 형태로 최대 2GB까지(파일 압축 시) Altinn에 업로드 가능함
  - SAF-T Financial 파일에는 기업 정보(Company Information), 원장(Specified ledger), 고객 정보(Customer Information), 공급자 정보(Supplier Information), 잔고 매핑 계좌(balance mapping account plan), 기준 코드에 매핑되는 VAT 코드(VAT codes mapping to standard codes)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노르웨이의 표준안은 OECD 표준안에서 원천문서 항목이 빠진 세 개 상위 항목(표제, 마스터파일, 총계정원장 입력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계정원장 입력값에서 물품정보, 재고수준이 제외됨
- 2022년 1월 1일부터는 SAF-T Financial 코드를 기반으로 VAT 신고가 이루어지며, 데이터는 ERP 시스템에서 바로 전송됨

- 아직 VAT 보고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지는 않으며 2021년 하반기 파일럿 테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음<sup>81)</sup>
- 노르웨이의 VAT 등록 기업은 1년에 6번 VAT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함
  - 1~2월에 대한 제출기한: 4월 10일
  - 3~4월에 대한 제출기한: 6월 10일
  - 5~6월에 대한 제출기한: 8월 31일
  - 7~8월에 대한 제출기한: 10월 10일
  - 9~10월에 대한 제출기한: 12월 10일
  - 11~12월에 대한 제출기한: 2월 10일

#### 다.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

- 새로운 VAT 신고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아직 제공되지 않은 상태로 세무당국의 추가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부실채권, VAT 수정·취소신고 관련 데이터에 관한 개별 SAF-T 코드가 존재하지 않음<sup>82)</sup>

#### 라. 효과

- VAT 신고가 SAF-T 형식을 기반으로 하므로 각 기업의 VAT 신고에 대한 세무당국의 통제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됨
- VAT 신고가 ERP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VAT 관련 정보를 Altinn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81) SOVOS, "Norway's New 2022 VAT Return: Detailed and Digital," <https://sovos.com/blog/2021/03/30/norways-new-2022-vat-return-detailed-and-digital/>, 검색일자: 2021. 4. 7.

82) PWC, "Nye krav til mva-melding fra 1. januar 2022," <https://blogg.pwc.no/skattebloggen/nye-krav-til-mva-melding-fra-1.-januar-2022>, 검색일자: 2021. 4. 7.

## 7. 그리스

### 가. 도입 과정

- 2019년 8월 그리스 공공수익국(A.A.D.E.)은 기업의 회계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새로운 전자장부 플랫폼인 myDATA(my Digital Accounting & Tax Application)의 도입을 발표함<sup>83)</sup>
  - myDATA는 A.A.D.E의 그리스 세무 당국의 새로운 전자 세금 포털로, 사용자가 세금 정보를 제출하고 전자 회계 장부 기록을 보관함<sup>84)</sup>
  - 도입 발표 이후 A.A.D.E는 myDATA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하고,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다양한 조직 및 협회와 보고 의무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 비공식 토론을 진행함
  
- 2020년 2월 20일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공급자 인증 기준과 함께 2020년 6월 22일에는 공동 장관 결정을 통해 myDATA의 프레임워크를 발표함<sup>85), 86)</sup>
  -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공급자 자격요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전송 방법 및 전자 송장 양식 등에 대해 규정함
  - myDATA 프레임워크에서는 응용 프로그램과 면제 범위, 전송할 데이터, 전송 방법 및 절차, 기한 및 처리 방법 등을 지정함

83) Pagergo, "E-book reporting scheme in Greece, explained, July 20th, 2020," <https://www.pagero.com/news/e-book-reporting-scheme-in-greece>, 검색일자: 2021. 7. 2.

84) SNI, "Greece Mandatory myDATA e-books Scheme and Electronic Invoices," February 9, 2021, <https://snitechnology.net/blog/greece-mandatory-mydata-e-books-scheme-and-electronic-invoices>, 검색일자: 2021. 7. 2.

85) SOVOS, "Greece Publishes Accreditation Scheme for E-invoicing Service Providers," February 27, 2020, [https://sovos.com/blog/vat/greece-publishes-accreditation-scheme-for-e-invoicing-service-providers/?utm\\_medium=social&utm\\_source=linkedin&utm\\_campaign=product&utm\\_term=e-invoicing&utm\\_content=social-ad](https://sovos.com/blog/vat/greece-publishes-accreditation-scheme-for-e-invoicing-service-providers/?utm_medium=social&utm_source=linkedin&utm_campaign=product&utm_term=e-invoicing&utm_content=social-ad), 검색일자: 2021. 7. 2.

86) SOVOS, "Greece: myDATA law is published as e-invoicing incentives are released," June 26, 2020, <https://sovos.com/blog/vat/greece-mydata-law-is-published-as-e-invoicing-incentives-are-released>, 검색일자: 2021. 7. 2.

- 2020년 10월부터 첫 제출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혼란으로 도입이 연기됨
  - 2021년 3월 기준으로 2021년 7월 1일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첫 분기별 제출은 2021년 10월 31일에 이루어질 계획임<sup>87)</sup>
  - 2020년 6월 재무성이 전자계산서 사용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한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도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의무화에 대한 계획은 없음

#### 나. 도입 상세 내용<sup>88)</sup>

- myDATA는 그리스 회계 표준 혹은 구체적인 법률 조항에 따라 회계를 기록하는 모든 기업 및 기타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 검증을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임

- myDATA 플랫폼은 상세 장부와 요약 장부의 두 가지로 구성됨

##### ① 상세 장부(Detailed Entries Book)

- 사업상 인풋 및 아웃풋 관련 회계 원천문서, 매년 회계 및 세무 사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회계 항목들을 포함함

- 이때 회계 원천문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표준화됨

- |                         |                                       |
|-------------------------|---------------------------------------|
| · 매출계산서                 | · 지급 관련 대변표(retail sales credit note) |
| · 서비스제공 계산서             | · 계약(수입 또는 비용)                        |
| · 지출 증빙                 | · 특별 서류(수금/지급 영수증)                    |
| · 신용계산서(credit invoice) | · 급여                                  |
| · 자체 배송 및 공급에 대한 계산서    | · 상각                                  |
| · 운송 서류                 | · 기타 조정 및 정규화 항목                      |
| · 서비스 제공 영수증            |                                       |
| · 유통 매출 영수증             |                                       |

87) Avalar VATlive, "Greece delays myDATA e-invoices e-books to 1 July 2021," Mar 16, 2021, <https://www.avalara.com/vatlive/en/vat-news/greece-delays-mydata-e-invoices-e-books-to-1-jan-2021.html>, 검색일자: 2021. 7. 2.

88) A.A.D.E, *IAPR e-book: What they are, How they work, What their purpose is*, <https://www.aade.gr/myDATA-IAPR-e-books>, 검색일자: 2021. 7. 2.

② 요약 장부(Summary Display Book)

- 월별 수입 및 지출 수준에서 상세 장부 업데이트 후, 수입 및 최종 세액,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세액 및 최종 세액, 인지세, 관세 및 기타 요금, 원천징수세 등에 대한 요약 사항을 표시함

□ 기업은 상기한 두 가지 장부 내용을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을 통해 표준화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전송 시 문서에 고유 항목 번호(MARK)가 부여됨

- ① 기업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이미 사용 중인 상용시스템(회계, ERP 등)으로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한 정보를 시스템 간 상호 연결을 통해 myDATA로 일괄 전송함
- ② myDATA 웹포털: 소량의 회계 원천문서를 작성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웹사이트 내 양식을 통해 회계 원천문서의 요약서를 입력할 수 있음
- ③ 온라인 금전 등록기(OCR): 소매 판매 거래를 위한 전자세금등록기(Electronic Tax Register Machines, ETRMs)를 myDATA 시스템과 직접 연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①, ②의 회계 및 ERP 소프트웨어나 웹포털을 통한 직접 입력 방식을 사용해야 함
- ④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에 의해 myDATA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됨

□ 전송 기한은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의 20일까지로 검토 중이며, 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이후 첫 번째 근무일로 연기됨

- 현재 복식 부기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매월, 단식 부기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 제출 마감일 익일에 첫 번째 신고 내용 검증이 이루어지며, 오류 사항이 있을 경우 그리스 세무 당국은 기업에 자동으로 메시지를 발송하여 60일 이내에 관련 수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림 III-6] 그리스 myDATA 요약장부 예시

SUMMARY DISPLAY BOOK											
Tax Year 2018										System Date :	
Taxpayer Full Name / Entity Name:										System Time :	
Entity TIN:											
Month	Transaction Type	Transaction Net Value	Input/ Output Balance (+/-)	Income Tax (+/-)	Input/ Output VAT	VAT Payment (+/-)	Withheld Taxes	Other Taxes	Stamp Duties	Duties	Dues
01 Jan	Revenue	1,000.00	600.00		240.00	144.00		40.00	36.00	15.00	
01 Jan	Expense	400.00			96.00		80.00				10.00
02 Feb	Revenue	600.00	-400.00		144.00	-96.00		40.00	36.00	15.00	
02 Feb	Expense	1,000.00			240.00		200.00				10.00
03 Mar	Revenue	1,000.00	600.00		240.00	144.00		40.00	36.00	15.00	
03 Mar	Expense	400.00			96.00		80.00				10.00
04 Apr	Revenue	1,000.00	600.00		240.00	144.00		40.00	36.00	15.00	
04 Apr	Expense	400.00			96.00		80.00				10.00
05 May	Revenue	600.00	-400.00		144.00	-96.00		40.00	36.00	15.00	
05 May	Expense	1,000.00			240.00		200.00				10.00
06 Jun	Revenue	1,000.00	600.00		240.00	144.00		40.00	36.00	15.00	
06 Jun	Expense	400.00			96.00		80.00				10.00
07 Jul	Revenue	1,000.00	600.00		240.00	144.00		40.00	36.00	15.00	
07 Jul	Expense	400.00			96.00		80.00				10.00
08 Aug	Revenue	600.00	-400.00		144.00	-96.00		40.00	36.00	15.00	
08 Aug	Expense	1,000.00			240.00		200.00				10.00
09 Sep	Revenue	1,000.00	600.00		240.00	144.00		40.00	36.00	15.00	
09 Sep	Expense	400.00			96.00		80.00				10.00
10 Oct	Revenue	1,000.00	600.00		240.00	144.00		40.00	36.00	15.00	
10 Oct	Expense	400.00			96.00		80.00				10.00
11 Nov	Revenue	1,000.00	600.00		240.00	144.00		40.00	36.00	15.00	
11 Nov	Expense	400.00			96.00		80.00				10.00
12 Dec	Revenue	1,000.00	600.00		240.00	144.00		40.00	36.00	15.00	
12 Dec	Expense	400.00			96.00		80.00				10.00
<b>Total Revenues</b>		10,800.00	4,200.00	582.00	2,592.00	1,296.00	0.00	0.00	0.00	180.00	
<b>Total Expenses</b>		6,600.00		0.00	1,584.00	0.00	1,320.00	480.00	432.00	0.00	120.00
<b>Total Taxes to be Paid in</b>				582.00		600.00	1,320.00	400.00	0.00	180.00	
<b>Balance to be Paid in</b>				0.00		-696.00	0.00	-80.00	-432.00	0.00	
<b>Entity Breakdown</b>		Inconsistency	Consistency	Consistency	Temporary Inconsistency	Consistency	Inconsistent	Consistency	Consistency		

Export to PDF File
Export to Excel File
Print

자료: A.A.D.E, *IAPR e-book: What they are, How they work, What their purpose is*, p. 20, <https://www.aade.gr/myDATA-IAPR-e-books>, 검색일자: 2021. 7. 2.

- 그리스 재무성은 기업들의 전자세금계산서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들을 제안한 바 있음
  - 회계 관련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효를 공급자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수령인의 경우 4년으로 단축함
  - 세금 환급 처리 기한을 현재 90일에서 45일로 단축함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 시 소요 비용의 2배를 감가상각 처리함
  - 첫 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전송 및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의 2배를 공제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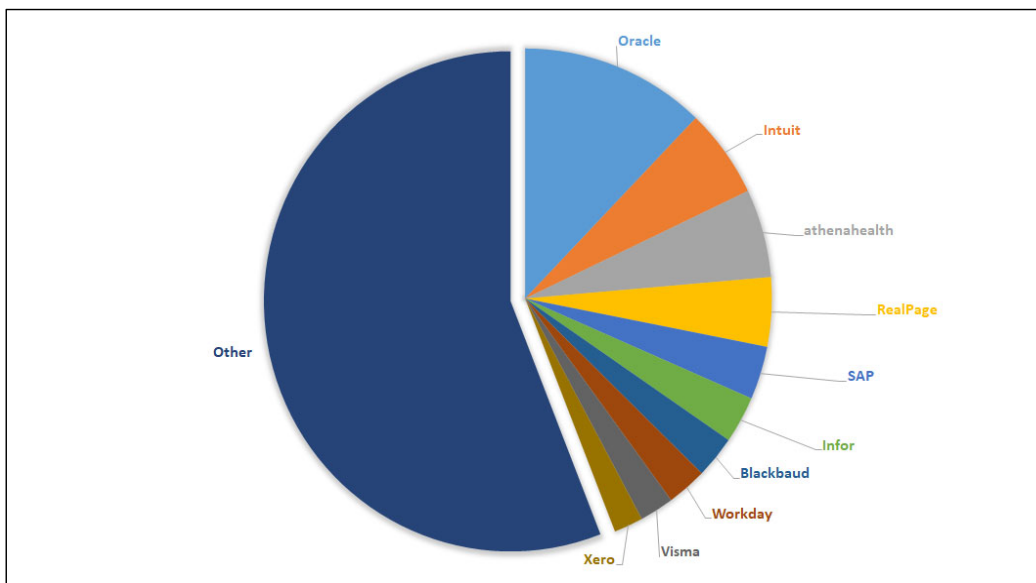
#### 다. 효과

- 그리스 A.A.D.E.는 myDATA의 도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기업 재무 데이터 검토 및 분석, 전송을 위한 절차가 자동화·표준화·현대화·단순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관리 비용이 절감됨
  -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필드의 자동 사전 작성을 염두에 둔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게 됨
  -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들의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가 단순해지고 처리 속도가 가속화됨
  - 탈세 및 밀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선정할 수 있음

## 8. 글로벌 ERP 업체 대응 현황

- 글로벌 ERP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업체 중 SAF-T 출력 기능 반영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업체는 SAP과 Oracle임

[그림 Ⅲ-7] 전 세계 ERP 시장 점유율(2020년 기준)



자료: Apps Run the World, "Top 10 Cloud ERP Software Vendors, Market Size and Market Forecast 2020-2025," <https://www.appsruntheworld.com/top-10-cloud-erp-software-vendors-market-size-and-market-forecast>, 검색일자: 2021. 5. 6.

- 2020년 현재 글로벌 ERP 시장점유율 1위 업체는 Oracle로 전 세계 ERP 매출의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Intuit, Athenahealth, Real Page, SAP 등이 잇고 있음
- SAP과 Oracle은 SAF-T 도입과 관련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유럽 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 혹은 헬스케어 등 일부 산업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타 상위 매출 업체들과 달리 여러 산업군의 기업들에서 활용하고 있음

- Oracle은 현재 포르투갈, 프랑스, 노르웨이, 폴란드 및 오스트리아 내 사용자에게 대해 SAF-T 정보 추출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sup>89)</sup>
  - Oracle의 JD Edwards EnterpriseOne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XML 2.0 형식의 SAF-T 보고서를 생성하며, 이에 필요한 추가 정보 및 세부 설정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함<sup>90)</sup>
    - OECD SAF-T 일반 추출기 보고서(R705001)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중간 XML 파일을 생성함
    - BIP(Business Intelligence Publisher)를 통해 생성된 중간 XML 파일을 규정에 부합하는 SAF-T XML 파일로 변환함
  - 포르투갈, 오스트리아의 경우 SAF-T의 특성과 현지 요건 등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SAF-T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공개하고 있음<sup>91), 92)</sup>
  
- SAP은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폴란드, 노르웨이 등의 SAF-T 도입 국가들에 대해, ERP 시스템 내에서 SAF-T를 출력할 수 있는 ERP 내 추가 기능 및 설정 혹은 별도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음
  - 포르투갈과 룩셈부르크의 경우 출력할 항목을 지정하여 이를 정의하고 맵핑하는 통상적 설정(generic setting)과 함께, 개별 기업 관련 사항 및 해당 과세 국의 요청 사항, 그리고 각국의 법률에 정의된 내용을 비롯한 항목 상세 내용과 관련한 국가별 세부 설정(specific setting)에 대한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sup>93), 94)</sup>

89) My Oracle Support, "E1: 70: OECD SAF-T VAT - V2.0 (Updated March 26, 2020) (Doc ID 260464 6.1)," [https://support.oracle.com/knowledge/JD%20Edwards%20EnterpriseOne/2604646\\_1.html](https://support.oracle.com/knowledge/JD%20Edwards%20EnterpriseOne/2604646_1.html), 검색일자: 2021. 5. 6.

90) Oracle Help Center, "JD Edwards EnterpriseOne Applications OECD Standard Audit File for Tax Purposes (SAF-T) Localizations Implementation Guide," [https://docs.oracle.com/cd/E16582\\_01/doc.91/e97460/ch\\_eu\\_saft\\_xml.htm#EOAST109](https://docs.oracle.com/cd/E16582_01/doc.91/e97460/ch_eu_saft_xml.htm#EOAST109), 검색일자: 2021. 5. 6.

91) Oracle Help Center, "JD Edwards EnterpriseOne Applications Localizations for Portugal Implementation Guide," [https://docs.oracle.com/cd/E16582\\_01/doc.91/e23360/saft\\_pt.htm#EOAPT2080](https://docs.oracle.com/cd/E16582_01/doc.91/e23360/saft_pt.htm#EOAPT2080), 검색일자: 2021. 5. 6.

92) Oracle Help Center, "JD Edwards EnterpriseOne Applications OECD Standard Audit File for Tax Purposes (SAF-T) Localizations Implementation Guide," [https://docs.oracle.com/cd/E16582\\_01/doc.91/e97460/ch\\_eu\\_saft\\_xml.htm#EOAST109](https://docs.oracle.com/cd/E16582_01/doc.91/e97460/ch_eu_saft_xml.htm#EOAST109), 검색일자: 2021. 5. 6.

93) SAP Help Portal, "Portugal - Financial Accounting - SAF-T," <https://help.sap.com/viewer/00036>

- 폴란드는 SAP ERP에 순차적으로 SAF-T 출력을 위한 기능 추가를 진행하며 관련 안내서를 공개하고 있음<sup>95)</sup>
  - 노르웨이의 경우 기존 소프트웨어의 변경 없이 S4FN이라는 추가 솔루션을 제공하여 SAP 내의 자료를 XML 형식의 SAF-T로 생성할 수 있게 함<sup>96)</sup>
- 글로벌 매출 상위 ERP 업체 외에도 SAF-T 보고 기능이 포함된 기업 회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일부 존재함
- Microsoft는 ERP 및 CRM 통합 소프트웨어인 Dynamics365에 SAF-T 생성 기능을 추가하여 노르웨이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Deloitte도 기존 ERP 시스템의 변경 없이 파일이나 웹서비스, DB의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여 SAF-T를 작성하는 taxCube를 개발하였으며,<sup>97)</sup> 이와 함께 SAF-T의 준비 및 검증과 관련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함<sup>98)</sup>

## 9. 소결

- SAF-T 도입 국가들은 대체로 도입 전후로 관련 입법 혹은 연구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시행 후에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

c20095c4adc8d3e3c605b1dfab7/6.18.16/en-US/ae4da55150d8cc7de1000000a441470.html?q=saf-t, 검색일자: 2021. 5. 6.

94) SAP Help Portal, "Luxembourg- Financial Accounting - Taxes- SAF-T," <https://help.sap.com/viewer/51ce7d5142874108b6146e754512323b/6.18.06/en-US/ae4da55150d8cc7de1000000a441470.html>, 검색일자: 2021. 5. 6.

95) SAP Help Portal, "What's New for SAP ERP, Add-on for Polish SAF-T Regulatory Requiremen," <https://help.sap.com/viewer/cbde0903348f43afaffa158e9922bd6f/1.0/en-US>, 검색일자: 2021. 5. 6.

96) S4FN, "SAP Add On Solution Norway SAF-T," <https://s4fn.com/sap-add-solution-norway>, 검색일자: 2021. 5. 6.

97) Deloitte, taxCube™, "Deloitte's Market Leading SAF-T Reporting Tool," [https://www2.deloitte.com/no/no/pages/tax/articles/saf-t/english/taxcube-deloitte.html?gclid=Cj0KCQjwp86EBhD7ARIsAFkgakgrg6liPReFMYz-gCi20gEf9hXnd9HhSdeUw1lJcNUKg9af\\_Wx81dIaAqdHEALw\\_wcB](https://www2.deloitte.com/no/no/pages/tax/articles/saf-t/english/taxcube-deloitte.html?gclid=Cj0KCQjwp86EBhD7ARIsAFkgakgrg6liPReFMYz-gCi20gEf9hXnd9HhSdeUw1lJcNUKg9af_Wx81dIaAqdHEALw_wcB), 검색일자: 2021. 5. 6.

98) Tax Cube, <https://www.taxcube.lt/en>, 검색일자: 2021. 5. 6.

마련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입이 이루어짐

- 포르투갈은 2008년 부가가치세에 SAF-T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입법과 인프라 도입 등 제도 확장을 진행하고 있음
  - 2012년 물품 운송 관련 문서에 대한 법령을 시작으로 2020년 SAF-PT의 사용 및 전송 방법 관련한 법령에 이르기까지 관련 입법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 2013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2019년에는 윈스톱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인 IES+를 도입함으로써 SAF-T가 원활하게 작성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관련 제도의 의무화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14년 SAF-PT 전자시스템이 첫 도입된 이후 신고형식 XML 단일 의무화는 2018년에, SAF-PT 사용 의무화는 2021년에 이루어짐
- 오스트리아는 2009년 1월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에 SAF-T 도입을 결정한 후, 같은 해 3월 매뉴얼과 규정을 마련하여 공표함
  - SAF-T 도입의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 전산화 의무화와 관련 데이터의 형식 및 대상, 관리에 대한 규정은 1998년과 2000년 입법을 통해 이미 마련되어 있었음
- 프랑스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발행하는 전산 회계 항목 파일인 FEC와 관련하여, 2012년에 「세금절차법」 내에 규정을 마련하고 2014년 도입함
- 스페인은 2016년 12월 2일 SII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과 부가가치세 특정 규정을 도입하고, 2017년 7월 1일 이를 발효함
- 폴란드는 2016년 SAF-T인 JPK\_VAT 도입을 공표하고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2018년 전면 적용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JPK\_VAT 제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전 대체함
- 노르웨이는 2014년부터 국세청과 세무사·회계사 협회가 공동 논의하여 작성한 도입안을 2016년 공표하였으며, 자발적 도입 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함
  - 2022년부터는 SAF-T를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그리스는 2019년 8월 새로운 세무회계 관련 전자장부 플랫폼인 myDATA의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2020년 6월 관련 프레임워크를 발표함

- 2020년 10월부터 첫 제출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어 2021년 7월 도입 후 10월 첫 제출이 진행될 계획임

- 대부분의 도입 국가들이 SAF-T를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 세무조사 목적상 활용하고 있으며, 제출 시기는 활용 목적과 각국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 세무조사 목적으로만 SAF-T를 활용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로, 이 경우 과세 관청 요청 시에만 파일을 제출함
  - 이 외에 포르투갈, 스페인, 폴란드, 노르웨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하고 있으며, 제출 시기는 국가별로 다름
    - 포르투갈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인보이스 발행일의 익월 15일까지, 이 외의 매입계산서, 현금영수증, 물류운송문서 등은 익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함
    - 스페인은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4일 이내에, 폴란드는 익월 25일까지, 그리스는 신고월의 20일까지, 그리고 노르웨이는 과세 관청 요청 시에만 제출함
- SAF-T 제출 의무 대상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등록 대상 기업 및 개인으로, 특정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들도 다수 존재함
  - 포르투갈은 연매출 5만유로 이상의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 스페인은 연매출 600만 유로 이상의 기업, 노르웨이는 거래 총액 500만유로 이상으로 매출 규모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함
    - 포르투갈과 폴란드는 도입 초기 매출액 기준이 각각 10만유로와 5천만유로였으나, 점진적으로 매출액 기준을 낮추어 적용 대상을 확대함
  - 오스트리아는 적용 대상에 대해 별도로 언급한 내용이 없으며, 프랑스는 전산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는 법인세 납부 기업 및 BIC, BNC, BA 소득세 납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와 그리스를 제외하고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페인, 노르웨이는 OECD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SAF-T 도입안을 마련함

- OECD 표준안을 따르는 국가들의 경우 XML 스키마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표준안의 표제, 마스터파일, 총계정원장 입력값, 원천문서의 최상위 항목을 기준으로 국가별로 재량에 따라 항목을 재구성함
    - 포르투갈은 OECD 표준안의 네 개 최상위 항목(표제, 마스터파일, 총계정원장 입력값, 증빙자료)을 모두 포함하나, 각 항목 내 일부 하위 항목은 제외됨
    - 오스트리아는 하위 항목 일부를 상위 항목으로 이동하여 네 개 상위 항목을 여섯 개로 재구성하였으며, 상세 항목에서는 일부 제외된 항목이 존재함
    - 노르웨이는 OECD 원천문서 항목이 빠진 세 개 최상위 항목(표제, 마스터파일, 총계정원장 입력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계정원장 입력값 하위 항목 중 물품정보, 재고수준이 제외됨
  - 그리스는 XML 스키마 구조를 취하나, OECD 양식과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항목을 구성함
  - 프랑스는 FEC 파일을 독자적인 양식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TXT의 단층 구조를 취함
- SAF-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미이행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국가가 일부 존재하며,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경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함
- 포르투갈과 프랑스, 폴란드는 SAF-T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이 미흡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포르투갈은 SAF-T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계산서에 대해 300~3,7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함
    - 프랑스는 조사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FEC 파일을 전송하지 않을 경우 5천유로 혹은 조사 시 소요 비용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함
    - 폴란드는 지정된 기간 내에 SAF-T 파일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대 2,800즈워티의 과태료를 부과함
  -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SAF-T 이용을 지원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과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SAF-T 활용을 촉진하기도 함
    -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전자세금 계산서 이용자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포르투갈은 소비자 대상 영수증 복권 이벤트를 실시함

- 이 밖에도 그리스는 myDATA 이용자에게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효와 세금환급 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SAF-T의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SAF-T 도입 관련 효과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언급된 내용은 많지 않으나, 일부 국가에서 추가적인 세수 확보와 부가가치세 gap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밝힘
  - 포르투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가가치세 세수가 약 137억 1천만유로에서 168억 8천만유로까지 증가하고, 납세의무액 대비 부가가치세 gap은 15%에서 10%로 줄어들었다고 밝힘
  - 폴란드는 JPK\_VAT와 STIR의 분석을 통해 국내 및 국외 기업 간의 신뢰성 낮은 부가가치세 명세서 거래를 발견하여 150만즈워티의 세수를 확보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연구기관 보고서에서 SAF-T가 도입된 2016년 이후 부가가치세 gap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있음이 언급됨
  - 부가가치세 gap 감소를 목적으로 2017년 SAF-T를 도입하였던 스페인 역시 2019년에 부가가치세 gap이 3.1%가량 감소하였음
  - 이 외에도 도입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신고에 소요되는 절차 및 시간 비용의 감소를 SAF-T 도입의 효과로 들고 있음
- 글로벌 ERP 업체들 중에서는 SAP과 Oracle은 SAF-T 도입의 움직임이 활발한 유럽 시장에 기반을 두고 여러 산업군의 기업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AP과 Oracle이 SAF-T 제출 시스템 구축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Oracle은 현재 포르투갈, 프랑스, 노르웨이, 폴란드 및 오스트리아 내 사용자들에 대해 SAF-T 정보 추출 기능을 제공함
  - SAP은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폴란드, 노르웨이 등의 SAF-T 도입 국가들에 대해, ERP 시스템 내에서 SAF-T를 출력할 수 있는 ERP 내 추가 기능 및 설정 혹은 별도 솔루션을 제공함
  - 이외에도 Microsoft가 ERP 및 CRM 통합소프트웨어인 Dynamics 365를 통해, Deloitte는 taxCub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SAF-T 관련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음

〈표 III-6〉 SAF-T 도입 국가 비교

구분	도입시기 및 과정	도입 분야	대상 (최근 기준)	OECD 표준안 준수 여부	제출시기	혜택(이행 시)/ 불이익(미이행 시)
포르투갈	·2008년 SAF-T 도입 ·2010년 관련 입법 시작 ·2013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2018년 SAFT-PT 신고형식 XML 단일 의무화 ·2019년 IES+ 도입 ·2021년 SAFT-PT 사용 의무화	·VAT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연매출 5만유로 이상의 사업자 (도입 당시에는 연매출 10만유로 이상)	·XML 형식 ·OECD 표준안의 4개 상위 항목(표제, 마스터파일, 총계정원장 입력값, 원천문서)을 모두 포함하나, 각 항목 내에서 일부 하위 항목은 제외됨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는 인보이스 발행일의 익월 15일, 이외 매입계산서, 현금영수증, 물류 운송 문서는 익월 20일까지	·미인증 소프트웨어 사용 시 300~3,750유로의 과태료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소비자 대상 영수증 복권 이벤트 실시
오스트리아	·2009년 1월 31일 SAF-T 도입 ·2009년 3월 표준안, 매뉴얼 및 규정 발표	·세무 조사	·확인된 바 없음	·XML 형식 ·하위 항목 일부를 상위 항목으로 이동하여 4개 상위 항목을 6개로 재구성 하였으며, 상세 항목에서는 일부 제외된 항목이 존재함	·과세관청 요구 시	·확인된 바 없음
프랑스	·2012년 FEC 관련 입법 ·2014년 FEC 도입	·세무 조사	·전산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는 법인세 납부 기업 및 BIC, BNC, BA 소득세 납부 기업	·TXT 형식 ·OECD 표준안을 따르지 않음	·과세관청 요구 시	·15일 이내 FEC 파일 미제출 시 5천유로 혹은 조사 비용의 10%의 과태료 부과

〈표 III-6〉의 계속

구분	도입시기 및 과정	도입 분야	대상 (최근 기준)	OECD 표준안 준수 여부	제출시기	혜택(이행 시)/ 불이익(미이행 시)
스페인	·2016년 관련 입법 ·2017년 7월 도입	·VAT 신고	·연매출 약 600만유로 이상 기업 ·REDEME 등록 기업체 ·VAT 목적의 기업체	·XML 형식 ·상세 항목은 확인 어려움	·VAT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4일 이내	·확인된 바 없음
폴란드	·2016년 JPK_VAT 도입 공표 ·2020년 모든 납세자로 적용 대상 확대 ·2020년 10월부터 VAT 신고 대체	·VAT 신고	·모든 VAT신고 대상 납세자(2016년 도입 당시에는 초기 연매출액 5천만유로 이상)	·XML 형식 ·상세 항목은 확인 어려움	·VAT 관련 정보는 익월 25일	·기간 내 SAF-T 미제출 시 최대 2,800즈워티의 과태료 부과
노르웨이	·2014년 SAF-T 도입안 공동 논의 진행 ·2016년 SAF-T 도입안 발표 ·2020년 SAF-T 제출 의무화 ·2022년 SAF-T 기반 VAT신고 예정	·VAT 신고	·거래 총액 500만크로네 이상의 기업	·XML 형식 ·원천문서 항목이 빠진 3개 상위 항목(표제, 마스터파일, 총계정원장 입력값)을 포함하고 있으나, 총계정원장 입력값에서 물품정보, 재고수준이 제외됨	·과세관청 요구 시	·확인된 바 없음
그리스	·2019년 myDATA 도입 공표 ·2020년 myDATA 프레임워크 발표 ·2021년 7월 도입 예정	·VAT 신고	·그리스 회계 표준을 따르는 모든 기업	·XML 형식 ·OECD 표준안을 따르지 않음	·부가가치세 신고일의 20일까지	·세무조사 시효 및 세금환급 처리기한 단축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에 대한 공제 혜택

자료: 본문 내용 저자 정리

## IV. 표준세무감사파일 국내 도입 전 검토 사항

- 본 장에서는 국내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도입 시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정리함
  - OECD 및 기도입국 등에서 언급한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의 편익과 관련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함
    - 아직은 관련 실증 연구가 진행된 바 없어 계량화된 편익보다는 당위적인 편익 위주로 서술함
  - ERP 솔루션 업체의 자문 등을 통해 시스템 변환 시 발생하는 비용을 산출하며, 과세 관청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문과 기타 제도 순응 비용에 대해 검토함
  
- 이에 더 나아가 현재 가장 활발하게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고 검증 측면을 비롯하여, 이 외에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표준세무감사파일은 기존의 세무 관련 정보 제출 방식에서 추가적으로 장부 정보를 전송하는 동시에 전표 수정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어, 해당 파일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함
  - 현재 유럽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 세무조사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표준세무감사파일에 대해 법인세 신고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도입 가능성을 검토함

## 1. 도입 편익<sup>99)</sup>

### 가. 조세 행정 비용 절감

- 기업의 세무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의 납세 행정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전산화된 소프트웨어 내의 자동 검증 기능을 통해 거래내용 검토 및 세무규정 준수 여부 파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음
  - 더 나아가 표준세무감사파일이 세무 신고를 대체하는 경우 세무 신고에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됨
    - 세무 신고에 필요한 금융 기관 및 기타 정부기관의 자료에까지 표준세무감사파일이 적용되어 세무 관련 자료의 원스톱 제출이 가능해질 경우, 해당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드는 번거로움이 한층 더 감소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표준세무감사파일의 공통 양식이 도입되는 경우 기업은 과세관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다량의 서면 보고서 및 데이터 제출을 위하여 투입해 온 추가 자원 또는 전문가 비용 절감이 가능함
- 과세관청 역시 세무 신고 검증 및 세무조사 시 기업의 회계정보 수집에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전자 회계 관련 기록이 증가함에 따라 과세관청의 세금 신고 담당자는 방대한 자료를

99) OECD, *Guidance for the Standard Audit File - Tax Version 2.0.*, <https://www.oecd.org/tax/forum-on-tax-administration/publications-and-products/technologies/45045602.pdf>, 검색일자: 2021. 4. 28.; 노르웨이 국세청, "Questions and answers - SAF-T Financial,"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start-and-run/rutiner-regnskap-og-kassasystem/saf-t-financial/questions-and-answers---saf-t-financial>, 검색일자: 2021. 4. 28.; IBFD, "European Union - Are You Ready for the Tax Technology?", [https://www.ibfd.org/sites/ibfd.org/files/content/pdf/ivm\\_2019\\_02\\_e2\\_1.pdf?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media&utm\\_campaign=tweet-week-14&utm\\_content=pdf/ivm\\_2019\\_02\\_e2\\_1](https://www.ibfd.org/sites/ibfd.org/files/content/pdf/ivm_2019_02_e2_1.pdf?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media&utm_campaign=tweet-week-14&utm_content=pdf/ivm_2019_02_e2_1), 검색일자: 2021. 5. 3.

이해하고 검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면 자료 검토를 통한 현재의 신고 검증 및 세무조사 관행은 현재의 전자 시스템에서는 적절하지 않음

- 표준세무감사파일이 도입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 정보의 수집이 자동화되어 회계 정보 수집에 투입되는 인력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음

## 나. 세무조사 소요 비용 절감

- 세무조사 시 기업은 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과세관청에서 요구하는 세무 관련 정보의 제출이 가능해짐
  - 세무조사 시에는 과세 관청의 요청에 따라 방대한 양의 세무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업 내 상당 부분의 인력이 세무조사 관련 업무에 투입되어 다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별도로 존재하였음
    - 국세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무조사 평균 소요기간은 42.9일인 것으로 조사됨<sup>100)</sup>
  - 세무 관련 정보가 사전에 모두 표준세무감사파일 양식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과세 관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간단하게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되므로, 세무조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금전적 비용이 절감됨

### 〈참고〉 세무조사 시 조사 대상 기업에 발생하는 비용

- |                                                                                                                                                                                                                                                                                                                                  |
|----------------------------------------------------------------------------------------------------------------------------------------------------------------------------------------------------------------------------------------------------------------------------------------------------------------------------------|
| <p><b>1.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내부 인력 및 지원 비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세무조사 관련 부서의 세무조사 자료 작성 및 제출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 및 업무 추진비 등 기타 지원 비용</li></ul> <p><b>2.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외부 전문가 활용 비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중 회계법인 등에 지급한 세무조사 대응 관련 용역비용을 공시한 기업은 43개임</li></ul> |
|----------------------------------------------------------------------------------------------------------------------------------------------------------------------------------------------------------------------------------------------------------------------------------------------------------------------------------|

100) 김태흠 국회의원실 자료: 『이데일리』, 「2020국감 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10건 중 1건 조사연장」, 2020. 10. 2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48726625934888&mediaCodeNo=257>, 검색일자: 2021. 6. 21. 재인용.

## 〈참고〉의 계속

- 추정세액 공시 의무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이상의 금액이 부과된 기업에 한하여 존재하므로<sup>1)</sup>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모든 기업에 대한 정확한 용역비용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용역비용을 공시한 기업의 용역기간은 최소 3주에서 최대 9개월이었으며, 소요된 비용은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6억 3천만원으로 나타남<sup>2)</sup>
-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법인의 세무조사 업무보수는 기본 금액이 최소 500만원(매출액 100억원 이하)에서 7천만원(매출액 700억원 초과)가량이며,<sup>3)</sup> 업종, 투입되는 전문가의 숙련도, 투입 기간 등에 따라 비용이 추가됨

자료: 1)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라(2), <http://law.krx.co.kr/las/TopFrame.jsp>, 검색일자: 2021. 6. 21.  
 2) KOCOinfo, 「TS2000 데이터베이스」, [http://www.kocoinfo.com/Koco\\_main.asp](http://www.kocoinfo.com/Koco_main.asp), 검색일자: 2021. 6. 16.  
 3) 세립세무법인, 「조사불복 업무보수표」, <http://www.taxoffice.co.kr/152>, 검색일자: 2021. 6. 21.

- 또한 표준세무감사파일은 원격 제출 및 조사 또한 가능하므로, 세무조사 시 조사자와의 대면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 원격조사를 수행할 경우 과세관청 측면에서도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됨

#### 다. 납세 준수 관련 모니터링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

-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기능이나 개별 세무조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정합성 검증이 가능함
  - 검증 초기에 납세 오류 내용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상대적으로 증대한 오류에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장부 조작 가능성이 감소하고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검증 효과를 증가할 수 있음
  - 표준세무감사파일은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세액과 관련한 물류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세무 신고 사항과 실제 거래 내역의 교차 검증이 가능함

## 라. 정보 표준화에 따른 편익

- 기업은 모든 거래 정보를 표준화 및 전자화함에 따라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를 사업 관리 시에도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
  - 표준세무감사파일은 거래 정보를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하고 관련 항목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므로, 기업 내부에서 사업 관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국가 간 합의된 표준이 마련되는 경우, 다국적 기업은 관할 국가가 다른 지점의 내부 자료 교환 시에도 표준세무감사파일을 통해 통일된 형식의 자료를 공유하여 자료의 파악 및 재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과세 관청 측면에서도 국가 간 합의된 표준이 마련될 경우 국외 거래에 대한 정보 교환과 검증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재 국외 거래와 관련한 자료는 국가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작성되어 자료 요청 혹은 내용 파악 시 애로사항이 존재하나, 표준세무감사파일로 공통 양식을 적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 및 정보교환 매뉴얼 중 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개인 또는 법인의 거주지, 과세소득 결정에 증빙이 되는 자료,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과 거래한 상대국 기업의 거래정보 등이 포함되는데,<sup>101)</sup> 이와 같은 정보들은 표준세무감사파일에 포함되는 정보인바, 표준세무감사파일의 도입으로 인해 국가 간 정보교환에 관한 편의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OECD에서 시행 중인 BEPS 프로젝트의 규정 중 Action 13 보고서의 작성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표준세무감사파일을 도입한다면 Action 13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의 취지를 내포하여 도입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별도의 피드백 자료 준비 부담을 줄여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정기 제출에 대한 납세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납세순응비용의 감소 또한 기대할 수 있음

101) 이경근, 『2020 국제조세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총람, 2020. p. 1221.

## 2. 도입 비용

### 가. 시스템 구축 비용

#### 1) ERP 시스템 변환 비용

##### 가) 글로벌 ERP

-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이미 도입하여 글로벌 ERP 시스템상에 표준세무감사파일 제출 기능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따라서 해당 기능을 국내 기업들의 ERP 시스템에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 단 국가마다 구축하는 표준세무감사파일 계정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내 도입 시 세부 계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OECD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ERP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받아 도출하였으며, 예상 구축비용은 <표 IV-1>과 같음
  - 예상 변환 비용은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도소매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약 2,520만원, 서비스·제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약 3,690만원의 구축비용이 발생함
    - 서비스·제조업의 경우 생산 및 서비스 모듈이 추가되므로 구축기간 및 비용이 더욱 높음
  - 예상 구축비용에 추가적으로 글로벌 ERP 시스템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료도 발생되며, 이는 약 800만~900만원 정도로 예상됨

〈표 IV-1〉 글로벌 ERP 업체 표준세무감사파일 예상 구축 비용

(단위: 원, 일)

업종	구축기간	구축활동	단가	수량	금액
도소매	1.5개월	프로젝트 관리	1,200,000	3	3,600,000
		모듈 컨설팅(회계)	800,000	7	5,600,000
		모듈 컨설팅(구매)	800,000	7	5,600,000
		모듈 컨설팅(영업)	800,000	7	5,600,000
		모듈 컨설팅(재고)	800,000	5	4,000,000
		기술 컨설팅	800,000	1	800,000
		합계			
서비스/ 제조	3개월	프로젝트 관리	1,200,000	6	7,200,000
		모듈 컨설팅(회계)	900,000	8	7,200,000
		모듈 컨설팅(구매)	900,000	5	4,500,000
		모듈 컨설팅(영업)	900,000	8	7,200,000
		모듈 컨설팅(재고)	900,000	4	3,600,000
		모듈 컨설팅(생산)	900,000	3	2,700,000
		모듈 컨설팅(서비스)	900,000	5	4,500,000
		합계			

자료: 글로벌 ERP 컨설팅업체 자문 결과 저자 정리

나) 국내 ERP

- 국내 일부 ERP 업체의 협조로 OECD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출 항목을 구성하는 것을 가정하여, 기존 ERP 프로그램에 표준세무감사파일 제출 기능을 추가할 때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산출함

- 표준안을 구성하는 항목들을 한국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재정의하여 현행 ERP 프로그램 내 데이터와 매칭하고, 새롭게 구축해야 하거나 재구성이 필요한 항목들을 식별함
  - ERP 내에 존재하는 기존 데이터와 매칭 혹은 신규 및 재구성 항목 구축 시 발생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이를 합산함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확한 표준안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OECD 표준안을 통해 가상 산출하는 비용이므로, 실제 도입 시 소요되는 비용과는 차이가 있음
- 한국형 표준안 마련 시 우리나라 실정에 따라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적용되는 레이아웃에 따라 개발 및 구축에 발생하는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데, 레이아웃의 세부 정보는 표준안 작성 단계에서 과세 기관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설정된 내용이 없어 현재 정의가 어려운 항목은 비용 산출에서 제외함
    - 개별 항목이 단순 입력형, 문항 선택형, 타 자료원과의 연계형, 혹은 계산형 중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레이아웃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됨
    - 비용 산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다수 존재하여 실제 구축 비용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표준세무감사파일 분석 및 설계, 개발을 위해 국내 ERP 업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총 약 15억원이며,<sup>102)</sup> 이는 업체 수익과 부가세가 제외된 값임
- 표준세무감사파일 표준안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에는 36일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6억 8천여 만원의 인건비 및 제경비, 기술료 등이 발생함

10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가이드 2020」에 기반하여 산정함, <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276&bcIdx=46149&searchExt1=>, 검색일자: 2021. 7. 19.

〈표 IV-2〉 국내 ERP 업체 표준세무감사파일 예상 구축 비용(분석 및 설계)

(단위: 천원)

항목	투입공수(일)	투입단가	직접인건비	제경비 <sup>1)</sup>	기술료 <sup>2)</sup>	소계	합계
분석 설계	고급	6	6,754	40,526	48,631	22,289	111,447
	중급	18	6,754	121,578	145,894	66,868	334,340
	초급	12	6,754	81,052	97,262	44,579	222,893
	합계	36		243,156	291,787	133,736	668,679
							668,679,363

주: 1) 직접인건비×120%

2) (직접인건비+제경비)×25%

자료: 국내 ERP 컨설팅 업체 자문 결과 저자 정리

- 설계가 완료된 후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총기능점수에 시스템의 규모와 복잡도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하여 산출하며, 이렇게 도출된 개발비 원가는 약 8억 3천만원임

〈표 IV-3〉 국내 ERP 업체 표준세무감사파일 예상 구축 비용(개발)

(단위: 점)

총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보정 후)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1,352	553,114원	0.8879	0.94	1.05	1.190	1.06	826,614,259원

자료: 국내 ERP 컨설팅 업체 자문 결과 저자 정리

〈표 IV-4〉 총기능점수 산정 근거

(단위: 점)

구분	ILF	EIF	EI	EO	EQ	계
기능 수	32	2	96	0	46	176
기능점수	480.0	20.0	576.0	0.0	276.0	1352.0
비중	36%	1%	43%	0%	20%	100%

자료: 국내 ERP 컨설팅 업체 자문 결과 저자 정리

〈표 IV-5〉 보정계수 산정 근거

구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
SW규모	$= 0.4057 \times (\log_e(1352)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0.8879
연계복잡성	1~2개의 타 기관 연계	0.94
성능 요구수준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5
운영환경 호환성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1.19
보안성 요구수준	네 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06

자료: 국내 ERP 컨설팅 업체 자문 결과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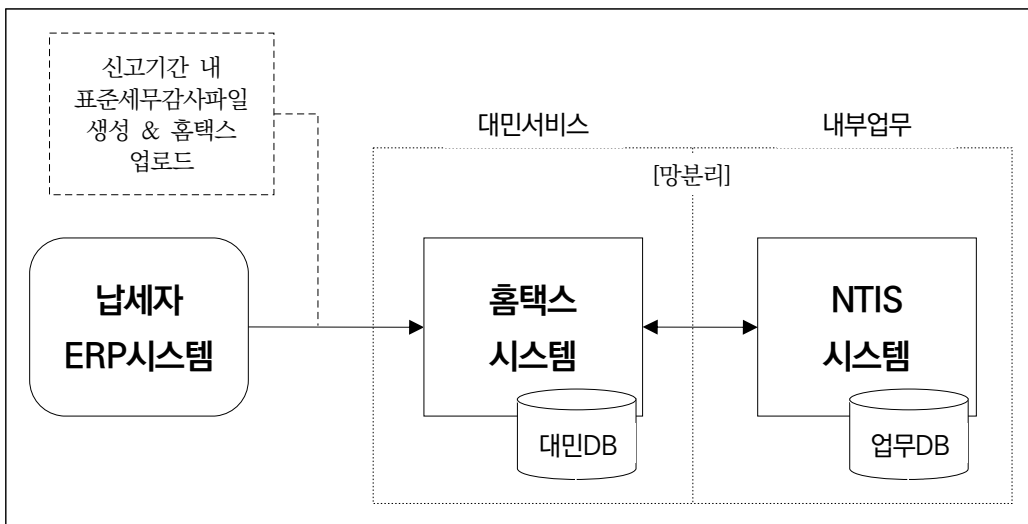
- 이번 산출한 비용은 사용자인 개별 기업에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ERP 업체에서 1차적으로 발생하는 분석 및 개발 비용임
  - 표준세무감사파일이 한정된 대상에 적용되어 일부 사용자의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실제로 필요해질 경우, 해당 비용의 일정 부분은 사용자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함
  - 다만 표준세무감사파일 제출이 국가 정책으로 모든 기업에 의무 적용될 경우, 규정상 이와 관련한 업데이트 비용은 사용자가 매년 일정 비율로 납입하는 유지보수 비용에 포함되므로 기존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기업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는 것이 ERP 업체 측의 입장임

## 2) 과세관청 발생 비용

- 표준세무감사파일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제출받게 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그림 IV-1] 참고)을 갖춰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축 비용이 발생함

- 납세자가 신고기간에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제출(업로드)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요구됨
- 대상 납세자들이 제출한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추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 내부업무시스템 확충과 운용인력이 필요함
- 표준세무감사파일 제출대상 납세자가 확대되는 경우 해당 규모에 맞춰 시스템 증설이 필요함
- 시스템 관리 비용 외에도 추적된 표준세무감사파일 파일을 분석하여 오류를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처리할 전문인력과 전산프로그램과 같은 자료 활용 체계를 갖추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한 존재함

[그림 IV-1] 세무 신고 시 표준세무감사파일 제출방식 도입 시 구성안



자료: 저자 작성

- 이때 세무조사 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한정적인 납세자에 대해 과세관청 요청 시에만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수동으로 제출받을 경우, 별도의 시스템이나 운용 인력이 필요하지 않음

- 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금지) 규정에 따라 표준세무감사파일 파일은 조사 기간 이후 과세관청에 보관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저장 시스템의 증설 또한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표준세무감사파일 파일을 분석하여 탈세혐의 사항을 도출하는 분석기법을 개발할 전문인력과 해당 분석기법을 수행할 전산프로그램 관련 비용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나. 제도 순응 비용

-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이행 시 필요한 법령과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인력과 시간, 노력이 투입되어야 함
  -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회계 전문가 및 시스템 개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과세 기관 내부 혹은 의회를 포함한 타 부처와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도 필요함
  -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납세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표준세무감사파일 제출의 세부 절차와 내용은 명료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이루어져야 함
    - 표준세무감사파일의 표준안을 설계하는 기술적인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 항목의 정의와 레이아웃 설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됨
- 시스템 구축에 드는 물리적 비용 외에도 사용자 및 과세 기관의 조사관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 심리적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전문적 회계시스템을 사용해 오지 않던 중소기업의 경우, 시스템을 처음부터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됨
    - 이 경우 시스템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회계시스템 이용자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음

- 사용자 및 조사관들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및 기능에 대해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을 준비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아울러 기업에서 기존에는 관리하지 않던 항목이 표준세무감사파일 제출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 시스템 변경에서 더 나아가 사업 및 회계 관리 프로세스의 재정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함
- 표준세무감사파일은 제출 항목에 거래 세부내역과 물류 상세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적용 대상자인 기업이 파일 작성 및 제출에 부담을 가지거나 반발할 가능성이 있음
- 세금 신고 내용의 정합성 검토나 세무조사 시 한정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업 거래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한다는 인상과 함께 추후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거나 제출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대한 염려가 존재함
  - 납세 대상자와의 꾸준한 논의를 통해 과세관청 내 자료 보존 기한 준수와 같은 규정과 보안 사항 등 시스템 충족 요건 등을 정교하게 법제화하고, 표준세무감사파일의 편익과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형성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 기관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 3. 도입 가능 분야

#### 가. 신고 검증

##### 1) 부가가치세

-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현재 서면신고를 제외한 대부분(2019년 기준 95.3%)<sup>103)</sup>의 경우 ERP시스템에서 작성한 신고 서식만을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같음하고 있음

103) 국세통계포털,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1. 4. 26.

- 아직 세금계산서의 전산화가 미흡한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일부 개인 영세 사업자가 발급한 수기 세금계산서 외의 대부분의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실시간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고 있고, 또한 상호 검증을 원칙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시스템 특성상 수기세금계산서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로 신고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의 경우 기본적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OECD의 표준세무감사파일 표준안 서식상 존재하나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에 존재하는 모든 사항을 표준세무감사파일과 교차 검증하기에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소 부족함
  - 표준세무감사파일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항만을 규정한 OECD 표준안 특성상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에 전면 도입하기에는 의제 매입세액과 면·과세 경영자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한국 부가가치세 제도 고유의 요소들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기능적인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임
    - 현재 OECD 표준세무감사파일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계산서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물류정보의 세부사항의 입력으로 물류적인 측면에서의 부가가치세 검증 기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물류정보로 인한 부가가치세 검증 강화의 측면에서만 표준세무감사파일을 부가가치세 검증에 도입하기에는 과세당국의 부가가치세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본 보고서에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도입의 비용 대비 효용 측면에서 의문이고, 그러한 추가적인 물류정보 입력 등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발이 예상됨
  
- 기존 ERP 시스템에서 추가적인 과정과 기능이 필요한 표준세무감사파일이 도입된 신고 방식의 특성상 기능적인 측면과 과세협력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영세한 규모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에는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분야 도입의 공통사항으로 표준세무감사파일이 도입되어 세무 감사 파일을 신고서식과 병행하여 전송하는 형식의 신고 특성상 통상적인 신고의 과정 중 하나로 감사목적의 회계 장부를 제출받는 형식이 됨
  - 일반적 법률 유보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위임이 있으면 권리의 제한이 가능하다 해도, 이러한 정도의 권리 제한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의 침해의 여부 등과 같은 요소의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 2) 법인세

- 현재 법인세 신고의 경우 거의 대부분(2019년 기준 99.3%)<sup>104)</sup> ERP 시스템상에서 생성된 법인세 신고 필수 서식<sup>105)</sup>을 파일화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신고서식 외의 세무감사용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추가 제출받는 경우 세무적인 요소가 반영되지 아니한 회계적 수준에서의 장부를 제출하는 표준세무감사파일 시스템의 특성상 표준세무감사파일 자료를 해석하고 재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료를 제공받는 국세청 측에서도 수립해야 함
- 대부분의 매입, 매출 자료가 적격증빙으로 송수신되는 부가가치세와는 다르게 법인세의 경우 신고와 그 신고된 사항의 검증 모두 심층적인 세무적 지식이 반영되는 세무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표준세무감사파일의 법인세 부문 도입 시 과세관청이 제출받는 표준세무감사파일 자료의 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함
  - 법인세 조정의 '어떠한 부분을 어떠한 요소들로 검증한다'라는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면 현재 OECD 표준세무감사파일 안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반영되게끔 확장 시킬 가능성은 존재함

104) 국세통계포털,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1. 4. 26.

10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부속서류 등

- 법인세 조정적인 측면을 모두 세부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표준세무감사파일 시스템의 과대화와 그에 따른 과대한 납세협력비용이 우려됨
  - 표준세무감사파일 OECD 표준안에 존재하는 물류, 감가상각 정보 및 급여정보 정도의 정보를 표준세무감사파일을 통해 법인세신고 또는 정기제출의 방식으로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경우, 기존의 신고서만 전송받는 신고방식과는 달리(비록 표준화되고 일부분이긴 하지만) 장부를 전송받는다는데 의의를 두고 조세 탈루 및 회피 혐의 분석에 대해 간접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임
  - 또한 표준세무감사파일을 도입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증된 ERP 내에서의 장부 소급 조작 방지 기능에 방점을 둔다면 유의미할 수 있음
  
- 국세청의 법인세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정 사례<sup>106)</sup>로 분석해 볼 때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편의상 분류할 수 있음
  - 세무조정상 탈루: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②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부당계상 ③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 ④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 회계상 허위 비용 계상: ⑤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 소득 세액공제 미흡: ⑥ 공제감면세액 적용 순서 착오로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 ⑦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 적용
    - ①의 경우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하여 탈루 정황을 분석하였으므로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시 국세청 자체의 시스템으로 표준세무감사파일 기반 합계대차대조표를 재조합할 수 있다면 유의미함
    - ②, ④의 경우 지리적 위치·이용 제한 등을 고려하고, 개인적 사용 혐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과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 및 유지관리비(신용카드 사용지역, 주유내역, 하이패스 사용 현황 등) 등의 자료를

106) 국세청, 「'20년 12월 결산법인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보도참고자료, 2021. 2. 25. 중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정 사례 발췌

- 수집하여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 관련성(접대 및 복리후생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므로 세부적인 신용카드 내역 및 업무 관련성(세무적인 부분이 반영)이 관련된 정보는 수집되지 않는 표준세무감사파일 특성상 본 사례에서는 적용할 수 없음
- ③의 경우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을 분석하여 적발했으므로 표준세무감사파일이 적용될 수 없음
  - ⑤의 경우 배우자, 자녀의 근무내역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건비의 허위 지급을 확인했으므로 인사, 직무 수행 정보를 기록하고 포함하는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시 유의미할 수 있음
  - ⑥, ⑦의 경우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의 검토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적발했으므로 소득, 세액공제 관련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표준세무감사파일 특성상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 나. 신고 대체

- 현재 표준세무감사파일은 신고사항 검증 정도의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추후 별도의 신고 서식 없이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제출만으로 신고를 대체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스키마상 법인세 서식 관련 요소의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신고서상 정보로 변환 및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국세청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XML 파일의 특성상 한 전표를 신고서상 양식의 정보로 매칭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신고서 양식상의 고유 코드를 전표의 정보에 부여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국세청과 ERP 업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수 있음

- 현행 OECD 표준세무감사파일 표준안과 비교하여 한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표준세무감사파일 제출만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스키마상 <표 IV-1> 및 <표 IV-2>, <표 IV-3>에 제시한 요소들의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함
- 비교는 명목적인 결과만을 비교한 것으로, 만약 기초정보를 표준세무감사파일에서 제공한다면 그 결과로 산출되는 정보(과세표준, 각종 공제, 공통 또는 안분 등)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V-6> 우리나라 신고서식상 공통서식 사항과 OECD 표준세무감사파일 비교

신고서상 공통사항		OECD 표준세무감사파일	적요
공통기본사항	신고기간	HeaderStructrue- CompanyHeaderStructure	각 양식에 대한 사항 추가 필요
	사업장 주소	HeaderStructrue - CompanyHeaderStructre, Customers, Suppliers - CompanyStructure	일치함
	상호	상동	일치함
	대표자	상동	정보 추가 필요
	사업자등록번호	상동	일치함

자료: 저자 작성

- 부가가치세의 신고 대체의 경우 현행 스키마 자체가 대체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도입되어 쓰이고 있는 만큼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에만 있는 요소들을 추가한다면 가능해 보임

〈표 IV-7〉 우리나라 VAT 신고와 OECD 표준세무감사파일 비교

우리나라 VAT 신고서식		OECD 표준세무감사파일	적요
별지 제21호 서식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매출, 매입세액 관련 정보	SalesInvoices, PurchaseInvoices - InvoiceStructure	대체적으로 해당 structure 내에 존재하나 대손세액 관련 사항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의 정보 추가 필요
	경감 공제세액	없음	세액공제 관련 정보의 추가 필요
	예정신고 세액 관련	없음	신고 관련 정보가 없으므로 추가 필요
	기타 선납세액 (사업양수자, 매입자 납부특례, 신용카드업자 대리납부)	없음	상동
별지 제38,39호 서식 -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수, 매입처수	SalesInvoices, PurchaseInvoices - InvoiceStructure	매출, 매입처 수 집계 정도의 기능 추가 필요
	매수	상동	상동
	공급가액	상동	상동
	세액	SalesInvoices, PurchaseInvoices - InvoiceStructure	상동
별지 제22호 서식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없음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측면에서의 추가 기능 추가 필요 (사유 지정, 집계 등)
	안분 계산 명세	SalesInvoices, PurchaseInvoices - InvoiceStructure 등	비율 계산 기능 추가 필요
	공통 매입세액, 정산 명세	상동	일치함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	없음	경과 과세기간 수 및 면과세 증감비율 산정 기능 추가 필요

〈표 IV-7〉의 계속

우리나라 VAT 신고서식		OECD 표준세무감사파일	적요
별지 제23호 서식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	GeneralLedgerEntries	일치함
별지 제25호 서식 - (부동산 임대공급금액 명세서)	임대사항 관련 정보	없음	자산을 등록할 시 임대사항 자체를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27호 서식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감가상각자산 종류 분류	MasterFiles-Assets 등	일치함
별지 제29호 서식 - 영세율 매출명세서	영세율 사유	SalesInvoices, PurchaseInvoices - InvoiceStructure	일치함
별지 제15호 서식 -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의제매입세액 해당 매입	없음	해당 서식에 대한 전체적인 스키마상 정보 추가 필요
별지 제16호 서식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 을)	신용카드 등 유형별 매입명세 합계	GeneralLedgerEntries	일치함(그 밖의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양식의 개별 카드 번호의 자료 수집 기능 추가 필요)
별지 제40호 서식 - 수출실적명세서	수출 재화 관련 사항	SalesInvoices, PurchaseInvoices - InvoiceStructure	일치함

자료: 저자 작성

- 하지만 법인세의 경우 결산과 조정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아 부가가치세에 적용할 수 있는 OECD 표준안의 스키마 정도로는 신고 대체가 어렵고, 만약 추진하더라도 많은 사항의 추가가 필요하여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표 IV-8〉 우리나라 법인세 신고서식과 OECD 표준세무감사파일 비교

우리나라, 법인세 신고서식		OECD 표준세무감사파일	적요
별지 제32, 33호 서식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급여 관련 사항	AuditFilePayroll	일치
	퇴직금 관련 사항	GeneralLedgerAccounts	회계적인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표준세무감사파일 내에 존재하나 세무조정에 관한 사항(부인액 등)은 추가 필요
별지 제39호 서식 -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	재고자산평가방법 검토사항	없음	평가방법, 신고방법 등에 대한 세무조정적인 정보 추가 필요
	평가조정계산	MasterFiles-Products, PhysicaStock,Assets	일치(자산 평가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반영 필요)
별지 제20호 서식 - 유형자산감가상각 비조정명세서	유형자산 감가상각 관련 사항	MasterFiles-Assets	회계적인 감가상각 사항은 표준세무감사파일에 반영되어 있으나 세무조정적인 측면 반영 필요
별지 제21, 22호 서식 - 기부금조정명세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조정명세서	MasterFiles-Gener alLedgerAccounts	소득금액 산정과 세무조정적인 측면 반영 필요
	기부금 명세서	MasterFiles-Gener alLedgerAccounts, Customers- CompanyStructure	일치
별지 제23호 서식 - 접대비조정명세서	접대비 관련 금액	MasterFiles-Gener alLedgerAccounts	문화접대비 등에 대한 세부 추가사항 추가 필요
	수입금액	GeneralLedgerAcc ounts	특수관계자 수입 분류에 대한 요소 추가 필요

〈표 IV-8〉의 계속

우리나라, 법인세 신고서식		OECD 표준세무감사파일	적요
별지 제3호 서식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없음	정해진 전표 요소들을 추출하는 표준세무감사파일의 특성상 법인 결산 관련 시스템의 별도 구축 필요
	과세표준 계산	없음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등에 대한 정보 필요
	납부할 세액 계산	없음	최저한세 계산 및 기납부세액 관련 정보 부재
	기타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없음	관련 정보가 없으므로 추가 필요
별지 제15호 서식 -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세무 조정사항	없음	세무 조정사항 반영에 대한 정보 추가 필요
별지 제16호 서식 - 수입금액조정 명세서	수입금액 조정계산	GeneralLedgerAcc ounts	매출에 관한 정보는 반영 가능하지만, 조정에 대한 부분에 관한 반영요소 추가 필요
	수입금액 조정명세	없음	작업진행률, 중소기업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 등에 관한 정보 추가 필요
별지 제26호 서식 - 업무무관부동산등 에관한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차입금 관련 사항	GeneralLedgerAcc ounts	지급이자 및 부채 관련 상세사항 반영 정보 추가 필요
	업무무관 자산 관련 사항	없음	업무무관 관련 세무조정적인 판단과 분류 요소 추가 필요
별지 제 29호 서식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사항 및 관련 비용	없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상세내용 추가 필요
별지 제34호 서식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충당금 관련 사항	없음	매출채권에 대한 설정 정보 반영 필요
별지 제50호 서식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자본금 및 이월결손금 관련 사항	GeneralLedgerAcc ounts	이월결손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추가 필요

자료: 저자 작성

## 다. 세무조사

- 정기 세무조사에 표준세무감사파일을 도입할 경우 정기적으로 세무 감사파일을 제출하는 형식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와는 다른 취지의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제출이 됨
  - 사실상 신고한 자료에 대한 검증의 취지로 행해지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의 도입과는 달리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위해서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제출받음으로써 신고에 대한 검증이 아닌 누적된 데이터에 대한 세무조사의 성격을 띠게 됨
  
- 현재 국세청 조사국에서의 정기 세무조사상 탈루를 적발하는 원리 및 방법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컨대 재고자산의 관련 사항 및 감가상각의 경향과 유형으로 조세 회피 정황을 파악하는 경우 표준세무감사파일 형식의 표준화된 감사 목적 장부 자료를 제출받음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세무조사에 표준세무감사파일을 도입하여 파일을 제출받는 형식에는 정기적으로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제출받는 방법과 세무조사의 시점에 제출받는 두 가지 제출 방식이 고려됨
  - 정기적으로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제출받는 형식을 취할 경우 장부 조작 방지 기능과 다기간 교차 검증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
    - 하지만 정기적으로 감사 파일을 제출한다는 측면에서 통일된 세무감사 형식으로 장부를 제출한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초과하여 항시적 세무감사로 인식되어 납세자의 매우 큰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며 납세 협력 비용 또한 증대됨
    - 또한 신고 부문에서의 도입 시와 마찬가지로 정기적 장부의 제출이라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정도의 권리 제한을 납세자에게 가하는데, 이러한 정도의 권리의 제한이 단순히 법령 개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질문조사권에까지 미칠 수 있는지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 비정기적으로 일정 규모의 납세자에게만 세무조사에 선정된 후 세무조사의 목적으로만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제출받는 방식을 취할 경우 피감사인에게 통일된 형식으로 세무감사 장부를 전송한다는 점으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정기적으로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제출받는 경우보다 납세자의 거부감과 납세 협력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장부 조작 방지의 사전 예방효과가 상대적으로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경우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세무감사 시 어떠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간접적으로 노출하므로 납세자의 조세 회피 가능성이 증가하고, 결국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게 되어 세무감사에 있어 표준세무감사파일 자체가 기초 장부 데이터만 제공받는 의미가 되어 제출이 무의미해질 수 있음

#### 4. 소결

□ 본 장에서 앞서 살펴본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시 발생하는 납세자와 과세 관청의 편익 및 비용을 요약하면 <표 IV-9>와 같음

<표 IV-9>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시 편익 및 비용

분류	편익	비용
납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검증을 통한 세무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 감소</li> <li>·세무 신고 및 세무조사 시 별도의 자료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 감소</li> <li>·원격 세무조사를 통한 조사자와의 대면 부담 감소</li> <li>·표준화 및 전자화에 따른 기업 데이터 품질 향상 및 기업 내부 정보 교환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시스템의 이해 및 적응을 위한 심리적 비용 발생</li> <li>·기업 거래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인식의 발생 가능성</li> </ul>
과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 신고 검증 및 세무조사 시 기업의 회계 정보 수집에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 절감</li> <li>·교차 검증을 통한 기업의 장부 조작 가능성 감소</li> <li>·원격조사를 통한 세무조사 투입 비용 절감</li> <li>·국가 간 합의된 표준 마련 시 국외 정보 교환 및 검증에 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세무감사파일을 제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증설 시 비용이 발생</li> <li>·시스템 운용인력, 축적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li> <li>·관련 법령 및 규정 마련을 위한 인력, 시간, 노력의 투입이 필요</li> <li>·신규 시스템의 이해 및 적응을 위한 심리적 비용이 발생</li> </ul>

자료: 저자 작성

-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을 통해 기업과 과세 관청은 각기 발생하던 납세 비용 혹은 조세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 교환 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기업은 보유한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납세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에도 보다 적은 노력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해짐
  - 과세관청은 세무 신고 검증 및 세무조사 시 기업의 회계정보 수집에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모니터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국가 간 합의된 표준이 마련될 경우 국외 거래에 대한 정보 교환과 검증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음
  
- 도입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시스템 구축 시 발생하는 물리적 비용과 신규 시스템에 대한 적응 및 반발에 따른 심리적 비용으로 나눌 수 있음
  - 기업에는 ERP 시스템 변환 혹은 구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글로벌 ERP와 국내 ERP의 시스템 도입 비용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 자문을 요청한 글로벌 ERP 업체의 경우 예상 구축비용은 라이선스 비용을 포함하여 기업당 3,320만~4,590만원가량이며, 구축 기간은 1.5~3개월로 예상하고 있음
    - 국내 ERP 시스템의 경우 항목을 재정의하고 전면 재구성하는 초기 개발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기존 제출하지 않던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 사업 관리 프로세스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수도 있음
  - 과세 관청의 경우 제출받은 표준세무감사파일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운용 인력, 축적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함
  - 이 밖에도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과 관련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반영된 규정 및 도입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신규 시스템의 이해 및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자 및 조사관들을 위한 상세하고 가독성 높은 매뉴얼과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아울러 표준세무감사파일은 납세자 입장에서 기업 거래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한다는 인상이 존재하는바, 자료 보존 기한 준수와 같은 규정과 보안 사항 등 시스템 충족 요건 등을 정교하게 법제화하고, 납세자로부터 과세 기관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 또한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분야에 대해 신고 검증, 신고 대체, 세무조사로 나누어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신고 검증에 도입 시 편익은 분명 존재하나, 투입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의 경우 추가적인 물류정보 제공을 통해 검증 기능을 강화시킬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가 이미 대부분 전자로 처리되고 있어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을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법인세의 경우 장부 소급 조작 방지를 예방하고 조세 탈루 및 회피 혐의에 대해 간접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도입 시 세무조정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제출하는 표준세무감사파일에 세무조정요소를 모두 반영한다면 시스템의 과대화와 그에 따른 소요 비용 증대가 우려됨
    - 또한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제출은 세무조사 목적의 회계 장부를 제출하는 형식과 유사하여, 권리 제한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 역시 필요함
  - 표준세무감사파일 제출로 신고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스키마 구조 변경 및 항목 추가 외에도, 신고서와 전표의 매칭을 위해 신고서 양식의 고유코드를 전표 내 정보에 부여하는 등 국세청과 ERP 업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부가가치세 신고 대체의 경우 OECD 표준안으로 제시된 항목을 기준으로 도입을 예상한다면, 일부 한국 고유 요소들만 추가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IV. 표준세무감사파일 국내 도입 전 검토 사항 95

- 법인세의 경우 결산 및 조정 관련 사항들로 인해 OECD 표준안에서 훨씬 많은 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세무조사에 도입할 경우 표준세무감사파일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세무조사 자료 제출 양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무조사 시 분석하는 요소들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음
  - 현재 조사 시점에 산발적인 자료에 대해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표준세무감사파일 형식의 표준 양식을 도입할 경우, 조사대상자가 사전에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어 납세자가 조사 대응에 투입하는 인력과 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세무조사 도입 시 정기적으로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제출하는 방안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해당 시점에만 일회성으로 제출받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정기 제출 시 장부 조작 방지와 대기간 교차 검증에 대한 효율성은 증대되나 납세자에게는 항시적 세무조사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 또한 납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납세자에게만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제출받는 형식을 취할 경우, 상대적으로 전자보다 납세자의 거부감과 납세협력 비용은 낮출 수 있음
- 상기한 바와 같이 표준세무감사파일은 도입 시 발생하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바,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무조사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도입 국가들에서도 도입 초기에는 한정된 분야 및 납세자에게 적용 후 그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 점진적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 제도 도입 시 충격을 완화하고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시 편익과 비용이 균형을 이루는 단계를 탐색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세무조사 시 조사 대상자에 한해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제출받는 방안을 도입할 경우 한정된 대상에게 합당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고, 과세 관청에서도 별도의 시스템

증설 및 구축 없이 과세 관청의 분석 관련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비용만 필요하므로  
예상 소요 비용이 가장 낮음

-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조사에 활용된 자료는 조사 후 보관이 금지되며, 표준세무  
감사파일 또한 동일한 조항을 적용받게 되므로 제출 대상자의 심적 부담도 비교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함
-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서도 맥락을 공유하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세무조사에 적용할 경우 제출 요청 자료나 탈루 분석기법 등에 대해 공개된  
내용이나 매뉴얼이 없어 현재 상황에서는 상세한 검토 및 시스템 설계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존재함

-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소관 부서의 소수 인원만 정보를 보유하는바, 세무조사  
분야에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됨

□ 또한 세무조사 시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비용이 사회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 적은  
것일 뿐 적용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시스템 변환 비용과 신규 제도에 대한 적응 비용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인센티브 제공 등 납세자의 협력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V. 표준세무감사파일 국내 도입 방안

### 1. 표준세무감사파일 국내 도입 시 사전 준비 사항

#### 가. 법령 및 규정 재정비

##### 1) 제출 형식

- 우리나라에서 표준세무감사파일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신고 서식의 전산 제출과 같은 의미의 프로그램상 양식의 정의 및 규정이 국세청이 제출받을 표준안의 제출과 관련하여 정비되어야 함

##### 2) 제출 근거 및 자료 축적 관련 규정

- 현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개별 세법에 자료 제출 근거 및 검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는 별도의 규정 없이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내의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행해짐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과세표준 및 환급세액을 사업자로부터 신고받으며, 해당 사항은 제74조(질문·조사)에 의거하여 검증하고 있음
  -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통해 정기적으로 과세표준 및 환급세액을 사업자로부터 신고받으며 해당 사항은 제122조(질문·조사)에 의거하여 검증함

- 세무조사의 경우 별도의 규정된 양식은 없으며 과세관청의 요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신고검증을 목적으로 하여 신고 시 제출받는 형식으로 표준세무감사파일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신고 시 첨부 서류에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제출 의무 추가 및 질문조사 규정의 신고 시 장부 제출요구에 대한 권한의 추가가 필요하고 장부 등의 보관 금지와 관련된 사항의 개정 또한 필요함
- 현행 질문조사권은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데, 신고 검증의 수단으로 표준세무감사파일이 도입될 경우 통상의 신고 시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제출하는 형식이 되므로 기존의 질문조사권의 내용과 상충됨
  - 또한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 등의 보관 금지) 규정에 따르면 표준세무감사파일 자료는 조사기간 이후 보관금지 대상 장부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제출받아 항시 보관하는 것은 위법임
- 신고검증만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사실상 현행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표준세무감사파일에 의한 의무만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됨
  - 따라서 세액공제 또는 검증 결과상 도출된 오류에 대한 책임의 경감 등과 같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의 도입을 통해 납세자에게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제출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신고 대체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에 대한 표준세무감사파일 관련 항목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함
- 하지만 각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고 항목들은 장부상 내용이 아니므로 신고 검증에서와 마찬가지로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여부 등과 같은 위험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표준세무감사파일이 세무조사의 경우에만 활용될 경우 현행과 같이 개별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의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함
  - 단 앞서 언급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제출 형식을 규정한 고시 등 제출 관련 규정의 제정은 필요함

### 3) 자료 활용 관련 규정

- 표준세무감사파일은 새로운 형태의 세무 자료 양식이므로, 제출된 자료의 적용 범위를 비롯하여 가공 및 관리,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신규 제정이 필요함
- 다만 자료 활용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표준세무감사파일의 도입에 준용할 수 있음

### 4) 미제출 시 제재 규정

- 현재 「법인세법」상과 「부가가치세법」상 장부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강제하는 가산세 등의 강제 규정은 없으므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 필수서류에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제출을 포함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함
  - 이러한 사항들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제출과 관련된 가산세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서는 미제출 시 현행 개별 세법에 근거하여 조사를 위한 명령사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으로 판단하여 제출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시에도 준용할 수 있음

## 나. 현행 국내 과세 인프라 현황 점검

-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전략적인 도입에 앞서 유용성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신고 현황을 파악 및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전자 세정 발전 단계에서 표준세무감사파일을 하나의 톨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미 높은 수준에서 전자 세정이 자리 잡혀 있어, 표준세무감사파일의 도입으로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함
  - 또한 도입 시에도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여 활용할 것인지, 신규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전략적 도입의 검토를 위해 현재 대부분의 도입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추가적인 확장 도입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에 대한 전자신고 현황을 살펴보기로 함

### 가) 법인세

- 현재 법인세 신고는 거의 대부분 세무회계시스템에서 작성된 법인세 신고 서식을 파일화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같음함
  - 2019년 신고 기준 총 74만 828건의 2018년 귀속 법인세가 신고되었으며, 이 중 전자신고는 73만 5,083건으로 약 99.3%를 차지함<sup>107)</sup>
    - 전자신고 73만 5,083건 중 2만 1,800건이 본인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한 경우이며, 나머지 약 97%에 해당하는 71만 3,283건이 세무 대리인에 의해 신고되어 대부분의 신고가 ERP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전자신고 파일에 해당한다 추정할 수 있음

107) 국세통계포털,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1. 4. 26.

- 법인세 신고에 있어 필수적으로 제출받아야 하는 양식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가 있으며, 이러한 양식들은 각 계정별 합계액만을 기재할 뿐 세부적인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음
- 예외적인 일부 서식(원천납부세액명세서,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개별 거래내역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재하나, 해당 서식의 기재 정보들은 상호 검증이 용이하거나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들에 한정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납부 세액에 대한 검증 측면에서 유용성이 낮음

[그림 V-1] 원천납부명세서 갑,을

사 업 명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도			
<b>원천징수 명세서</b>					
①	②	③	④	⑤	⑥
계	주	사	사	원	이
(내국인)	(내국인/외국인)	업자등록번호	업자등록번호	천	(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또한 이러한 서식에 기재되는 세부 정보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보관 목적의 실물 세무조정계산서에만 첨부되어 기록되거나, 전자신고 시 별도 가공 없이 PDF 등의 형태로 제공되므로 DB 형태로 활용 가능한 정보는 아님
  - 표준세무감사파일 제출을 통해 해당 정보들을 DB화하여 신고 내용과 교차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데이터 용량 등 물리적인 한계는 존재함
- 우리나라는 이미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정보를 ERP 시스템 내에서 신고 파일로 변환한 후 해당 파일을 홈택스로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기한 정보들을 모두 표준세무감사파일 양식으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ERP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추가 기능을 삽입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표준세무감사파일을 도입한 기존 도입 국가들에서는 기존 ER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제출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글로벌 ERP 업체들은 이미 관련 기능을 탑재하고 있음

#### 나) 부가가치세<sup>108)</sup>

- 현재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음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면, 과세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가 아닌 경우 또한 점차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확대되고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직접적인 현금 매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원이 국세청 전산망으로 신고됨

108) 국세청,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020. 6.

-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함

[그림 V-2] 세금계산서 양식(공급자보관용)

<b>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b>																																																																																																								
												책 번호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권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호																																																																																												
												일련 번호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공급자	등록번호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대표자)					상호(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비고																																																											
연월일															공관수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연월일															공관수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월일															품목															규격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함 청구함																													

210mm×148.5mm (인쇄용지(특급) 34g/m<sup>2</sup>)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각 분기의 말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의 말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있음
  - 영세율에 해당하는 매출이 대부분인 납세자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존재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면제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와 같은 협력사항들이 존재하고 의료업 등과 같은 일부 업종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 영세율 매출명세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등 업종별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신고서들이 존재함
  - 개별 세금계산서에 대한 사항들을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어 신고서상에서는 개별 세금계산서에 대한 사항들이 신고되지 않고, 대부분의 신고서상 사항들은 합계 금액으로 보고되며 그러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허위 인지는 알 수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는 행정비용과 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발급 의무자에 대해 의무 불이행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됨
  - 과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확대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했으나 201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일몰됨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임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지연전송 가산세, 미전송 가산세가 있음

〈표 V-1〉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단위: %)

구분		내용	가산세율 <sup>1)</sup>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sup>2)</sup>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전자 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간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1	-
전송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0.5	-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0.3	-

주: 1)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에 곱함

2) 수취자의 경우 발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통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

- 부가가치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시스템과 연계한 높은 수준으로 활성화된 전자 신고를 통해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시와 유사한 편익을 누리고 있음
- 변환 비용을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을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이하의 수준으로 최소화시키거나,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이 아닌 기존 시스템을 발전시킨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 납세 협력 비용 최소화 방안 검토

### 1) 표준세무감사파일 제출 절차 및 시기

-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제출 절차 및 시기는 신고 검증 및 대체 목적인지 세무조사 목적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표준세무감사파일은 실시간으로 신고 내용을 검증하거나 신고를 대체함으로써 납세자가 세무 신고를 위해 별도로 투입하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이러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감가상각, 급여 정보를 월별 또는 실시간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스페인과 같은 기존 도입 국가들의 사례와 현재 한국의 홈택스 시스템을 비교하였을 때 시스템적인 개량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세무조사 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대상자가 제출하는 표준세무감사파일 자료를 1회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과세 당국이 세무조사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출 항목과 양식을 사전에 표준화하여 확정해 두어야 함
  - 현행 세무조사는 과세 당국의 추가 요청 자료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위해 조사 대상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므로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지양해야 함
    - 지금까지는 비정형화된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는 시간들로 인해 평균 4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때 자료를 일정 주기(연 1회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표준세무감사파일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동시에, 조사 대상 기업이 특정 조사 기간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이를 상시 세무조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납세자의 심리적 거부 반응 역시 협력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과세 당국 요청 시에만 표준세무감사파일 양식으로 제출하는 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음

## 2) 납세자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 국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제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비용에 대한 구축 비용을 직접 지원하거나 해당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함
  - 글로벌 ERP 업체의 경우 일부 유럽 국가의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으로 인하여 이미 ERP 시스템 내 표준세무감사파일 모듈이 갖추어져 있어 글로벌 ERP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관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에 ERP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글로벌 ERP 시스템 사용이 드물기 때문에 시스템 내 새로운 모듈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포르투갈, 그리스 등에서는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중소기업 혹은 개인사업자를 위해 웹포털을 통한 입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구축비용을 직접 지원하거나 구축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을 통하여 납세 협력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1년 현재 포르투갈은 중소기업에 대해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도입 예정인 그리스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시 소요 비용에 대한 공제를 계획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홈택스 혹은 전자신고 파일로 세금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표준세무감사파일 제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표준세무감사파일이 세무조사 목적으로 도입되어 기업이 주기적으로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자동 검증 기능이 포함되는 표준세무감사파일의 특성상 해당 기업은 세무조사 정기 선정 사유가 되는 불성실 혐의나 신고 내용의 적정성 의심 등과 같은 기준들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기업에 세무조사 정기 선정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음
  - 세무조사 정기 선정 사유는 ①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② 최근 4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함<sup>110)</sup>
  - 이 밖에도 그리스의 사례처럼 표준세무감사파일 시스템 이용 시 특정 회계 이슈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효를 단축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음

## 2. 표준세무감사파일 국내 도입 로드맵

-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도입 과정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개략적으로 언급하였으며, 향후 도입이 결정된다면 보다 장기에 걸쳐 상세하고 심도 있는 분석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세무감사파일의 도입 준비 단계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제시하고자 하며, 각 단계에서는 과세 관청에서 직접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거나 혹은 위탁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1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북」, [https://nts.go.kr/tax\\_inquiry/guide\\_01.html](https://nts.go.kr/tax_inquiry/guide_01.html), 검색일자: 2021. 6. 14.

### 가. 1단계: 표준세무감사파일 한국형 표준안 작성

- 국내 세무 신고 및 신고 내용 검증에 필요한 항목들을 정리하고, 각 항목이 포함해야 하는 값과 제출 양식(레이아웃)과 같은 세부 사항을 결정함
  - OECD 제안하는 표준안이 존재하기는 하나 각 국가가 처한 과세 환경에 따라 현지화가 가능한 구조이며, 실제로도 도입 국가들에서는 OECD 표준안을 바탕으로 항목을 이동, 추가, 삭제한 형태의 표준세무감사파일 제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시스템 변환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도 한국형 표준안은 초기 단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에서도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에 따른 시스템 변환 비용 분석을 시도 하였으나, 개별 항목의 명확한 정의, 값의 특징, 기준, 범위, 선택지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된 표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추정에 어려움을 겪음
- 이때 표준안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다음 단계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통해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음

### 나. 2단계: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한국형 표준세무감사파일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집단이나 협업이 필요한 개인 및 기관 등에 의견 청취를 진행함
  - 설문, 공청회, 인터뷰, 자문회의 등 기업의 회계 담당자, 세무대리인, 협회, 관련 서비스 제공자, 혹은 관계 부처 담당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하여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예상되는 편익과 애로사항들을 파악함
  - 이 단계에서는 꾸준한 소통을 통해 표준세무감사파일의 편익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취합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인센티브 요소들을 도출하여 향후 시스템 개발과 관련 규정 마련 시 반영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순응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음

#### 다. 3단계: 비용편익 분석 및 적용 범위 확정

-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에 대한 실익 여부를 판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도입 수준과 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함
  - 우리나라는 표준세무감사파일 이전에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자리 잡혀 있는 전자 세정 관련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어,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으로 인한 편익이 기존 도입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 또한 존재함
  - 해당 제도 및 시스템을 표준세무감사파일 제출 시스템으로 변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변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편익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의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일부 분야에만 선택 적용하는 전략적 도입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무조사 분야부터 순차적인 도입을 제안한바, 이 단계에서 이와 관련한 확인 역시 이루어질 수 있음

#### 라. 4단계: 법령 검토 및 제·개정/시스템 설계 및 개발

- 실제적인 도입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단계 진행 상황을 통해 확정된 도입안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함
  - 해당 안을 도입하고 인센티브 제공과 같이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혹은 추가적인 제정이 필요한 규정들을 검토하고 재정비함
  - 시스템의 경우 과세 관청 측에서 개발팀을 조직하거나 외부 용역을 진행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사용 중인 시스템을 취급하는 전산업체 혹은 ERP 업체 등에 도입안 상세 내용을 전달하여 시스템 변경을 준비하도록 할 수도 있음

마. 5단계: 시범 도입

- 확정된 범위에 대해 전면적 도입을 진행하기 전 특정 분야 혹은 대상에 대한 시범 도입을 통해 적응 기간을 가지고, 계획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음
  - 사전 단계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조사 등 전 분야에 도입이 결정되었을 경우, 일부 분야에 먼저 도입하여 테스트 기간을 거칠 수 있음
  - 특정 분야에만 도입을 결정하였을 경우 매출액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는 일부 대상 기업에 먼저 시범 적용할 수도 있음

[그림 V-4] 표준세무감사파일 국내 도입 로드맵

구분	현재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0단계	전반적 도입 검토				
1단계		표준세무감사파일 한국형 표준안 작성 (1.5년)			
2단계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1년)		
3단계			비용 편익 분석 및 적용 범위 확정 (1년)		
4단계				법령 검토 및 제·개정 (1.5년)	
				시스템 설계 및 개발 (1.5년)	
5단계					시범도입

자료: 저자 작성

## VI. 결론

- 표준세무감사파일은 세무 행정의 현대화 및 전자화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현재 도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는 전자 세정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를 핵심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전국 세무서를 연결하는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전자 세정을 시작하였으며, 2002년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해지고 2011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되는 등 세무 행정 전자화는 지난 20여 년간 자리를 잡은 상황임
  - 따라서 표준세무감사파일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에 활용하던 시스템을 능가하는 편익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함
    -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기존 시스템이 이미 표준세무감사파일 수준의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음
  
- 표준세무감사파일은 현행 국내 전자신고 시스템보다 거시적인 수준까지 고려하므로 추가적인 편익이 존재하는 것을 분명하나,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기능을 추가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함
  - 표준세무감사파일은 관련 증빙 문서 또한 모두 표준화된 전자 파일로 변환할 수 있고, 국제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국외 간 정보 교환까지 용이하게 함
  - 법인세 신고는 표준세무감사파일이 도입될 경우 현행에 비해 큰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제출 자료의 양이 방대해지고 조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시스템 설계와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됨

- 세무조사의 경우 제출 자료 양식을 표준화하고 조사 준비 및 실제 조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조사에 투입되는 제반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적용 범위 조정을 통해 비용 또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표준세무감사파일을 중심으로 전자 세정을 구상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미 구축한 독자적인 시스템이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유럽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와 그리스는 OECD 표준안과는 다른 독립적인 표준세무 감사파일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 이때 국제 표준안을 따르지 않더라도 국제적인 수준의 정보 교환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호환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할 것임
  - 세무조사와 같이 비용 조정이 가능한 일부 분야에 표준세무감사파일을 한정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에 걸쳐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음
  
- 표준세무감사파일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납세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 대한 반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도입을 위해 장기에 걸친 준비 단계가 필요할 것임
  - 사용자 및 협력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령 및 규정을 제정해야 함
    - 기존 도입 국가들에서도 도입 전 공개협의, 비공식토론, 빅데이터 분석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표준세무감사파일의 매뉴얼 혹은 프레임워크를 작성함
    - 또한 표준세무감사파일 시스템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입 전 혹은 도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표준세무감사파일의 형식이나 소프트웨어 인증과 같은 관련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 표준세무감사파일 지원 기능을 하는 하드웨어 시스템 역시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임
    - 국내 기업이 사용하는 ERP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 및 회계 관리 소프트웨어의 변경 혹은 기능 추가가 필요함

- 이 밖에도 포르투갈의 경우 표준세무감사파일의 도입 과정에서 IES+와 같은 납세 관련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과 같은 주변 인프라를 함께 마련한 바 있음
-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러한 기능들이 이미 정착된 상황이라는 하나, 표준세무 감사파일을 도입하는 경우 변경되는 상황에 적합한 신규 시스템을 고안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업데이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1. 문헌자료

국세청,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020.

국세청, 「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보도자료, 2021. 2. 25.

이경근, 『2020 국제조세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통람, 2020

정훈·박하얀·박소현, 『표준세무감사파일 도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Autoridade tributaria e aduaneira, *A tool for e-Audit and Compliance*, IOTA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2019

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 *Standard Audit File-Tax Handbuch*, 2009

CASE -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EU CASE Reports 2020- Study and Reports on the VAT Gap in the EU-28 Member States: 2020 Final Report*, 2020

EU, “Study and Reports on the VAT Gap in the EU-28 Member States:2020 Final Report,” 2020 Final Report, 2020.

Ernst & Young, *Tax authorities are going digital*, 2017

Forum on Tax Administration, *Guidance for Standard Audit File - Tax Version 2.0*, OECD, 2010

\_\_\_\_\_, *Center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2005

OECD, *Guidance on tax compliance for business and accounting software*, 2005. Forum on Tax Administration, Center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May 2005.

Majdanska, A. and K. DziwinskiAlica, “The Potential of a Standard Audit Fie-Tax in the European Union: A Chance for Coordinatheed VAT Administration?,”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Vol. 72, No. 10, 2018, pp.

Polish Economic Institute, *Reducing the VAT gap: lessons from Poland*, February, 2019.

PWC, *SAF-PT, Communication of billing and logistic information to Portuguese Tax and Customs Authorities*, 2014.

## 2. 법령

### 대한민국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을)]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노르웨이

bokfø ringsloven § 13

bokfø ringsforskriften § 7-8

### 오스트리아

Inkrafttreten der Änderungen der §§ 131 Abs 3 und 132 Abs 3 BAO

### 포르투갈

Decree-law No. 198/2012

Decree Law No. 28/2019

Decree Law No. 48/2020

Portaria No. 160/2013

Portaria No. 302/2106

### 프랑스

Livres des Procédures Fiscales L.47A I

### 3. 웹사이트 자료

국세통계포털,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1. 4. 6.

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북」, [https://nts.go.kr/tax\\_inquiry/guide\\_01.html](https://nts.go.kr/tax_inquiry/guide_01.html), 검색일자: 2021. 6. 14

이데일리, 「2020국감 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10건 중 1건 조사연장」, 2020. 10. 2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48726625934888&mediaCodeNo=257>, 검색일자: 2021. 6. 21.

세립세무법인, 「조사불복 업무보수표」, <http://www.taxoffice.co.kr/152>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라(2)」, <http://law.krx.co.kr/las/TopFrame.jsp>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가이드 2020」, <https://www.sw.or.kr/site/sw/>

KOCOinfo, 「TS2000 데이터베이스」, [http://www.kocoinfo.com/Koco\\_main.asp](http://www.kocoinfo.com/Koco_main.asp), 검색일자: 2021. 6. 16.

노르웨이 국세청, “Questions and answers - SAF-T Financial,”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start-and-run/rutiner-regnskap-og-kassasystem/saf-t-financial/questions-and-answers---saf-t-financial>, 검색일자: 2021. 3. 15.

노르웨이 온라인 공공서비스 가이드, “Altinn,” <https://www.norge.no/en/service/altinn>, 검색일자: 2021. 4.

폴란드 국세청, “JPK\_VAT z deklaracją,” <https://www.podatki.gov.pl/jednolity-plik-kontrolny/jpk-vat-z-deklaracja/jpk-vat-z-deklaracja-i>, 검색일자: 2021. 5. 3.

폴란드 정부 “Nowa wersja aplikacji e-mikrofirma do składania JPK\_VAT z deklaracją” <https://www.gov.pl/web/kas/no>, 검색일자: 2021. 5. 3.

폴란드 정부 기업가 운영 지원 관련 정보 “Złożenie deklaracji VAT” <https://www.biznes.gov.pl/pl/firma/podatki-i-ksiegowosc/chce-rozlicz>, 검색일자: 2021. 5. 3.

- A.A.D.E, *IAPR e-book: What they are, How they work, What their purpose is*, <https://www.aade.gr/myDATA-IAPR-e-books>, 검색일자: 2021. 7. 2.
- AEAT 신고서 제출 홈페이지 E-Office, [https://www.agenciatributaria.gob.es/AEAT.sede/en\\_gb/Inici](https://www.agenciatributaria.gob.es/AEAT.sede/en_gb/Inici), 검색일자: 2021. 4. 21.
- Agencia Tributaria, “1.1. What is the Immediate Supply of Information (SII)?,” <https://www.agenciatributaria>, 검색일자: 2021. 4. 5.
- Akmf, <https://www.akmf.pl>, 검색일자: 2021. 5. 14.
- Apps Run the World, “Top 10 Cloud ERP Software Vendors, Market Size and Market Forecast 2020-2025,” <https://www.appsruntheworld.com/top-10-cloud-erp-software-vendors-market-size-and-market-forecast>, 검색일자: 2021. 5. 6.
- Avalara, “Austria SAF-T,” <https://www.avalara.com/vatlive/en/country-guides/europe/austria/austrian-saf-t.html>, 검색일자: 2019. 11. 28.
- \_\_\_\_\_, “France SAF-T,” <https://www.avalara.com/vatlive/en/country-guides/europe/france/french-saf-t.html>, 검색일자: 2020. 1. 8.
- \_\_\_\_\_, “Portuguese SAF-T,” <https://www.avalara.com/vatlive/en/country-guides/europe/portugal/portuguese-saf-t.html>, 검색일자: 2021. 1. 5.
- Avalar VATlive, “Greece delays myDATA e-invoices e-books to 1 July 2021,” Mar 16, 2021, <https://www.avalara.com/vatlive/en/vat-news/greece-delays-mydata-e-invoices-e-books-to-1-jan-2021.html>, 검색일자: 2021. 7. 2.
- 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 “Amtliche Veröffentlichungen,” <https://findok.bmf.gv.at/findok?execution=e2s1>, 검색일자: 2020. 11. 28.
- \_\_\_\_\_, “Zurverfügungstellung von Daten auf Datenträgern - Standard Audit File-Tax (SAF-T),” <https://www.bmf.gv.at/themen/steuern/fristen-verfahren/bundesabgabenordnung/standard-audit-file-tax.html>, 검색일자: 2021. 4. 8.
- Chumbau, A., H. J. Pereira, and S. Rodrigues, “Simplified Business Information: Impact of Admin Data in the production of Business Statistics,” ESS Seminar in Rome, Mar 19, 2010, <https://joinup.ec.europa.eu/collection/>

- egovernment/document/simplified-business-information-portugal-ies, 검색일자: 2020. 2. 10.
- Compta Facile, “Le fichier des écritures comptables,” <https://www.compta-facile.com/fichier-des-ecritures-comptables-fec-definition-contenu-utilite>, 검색일자: 2020. 1. 4.
- Deloitte, “New digital VAT reporting from 2022,” <https://www.taxathand.com/article/16052/Norway/2021/New-digital-VAT-reporting-from-2022>, 검색일자: 2021. 4. 7.
- Deloitte - Tax@hand, “Details published on submission of Accounting SAF-T (PT) file,” <https://www.taxathand.com/article/15115/Portugal/2020/Details-published-on-submission-of-Accounting-SAF-T-PT-file>, 검색일자: 2021. 4. 8.
- \_\_\_\_\_, “FTA Guidelines on file of accounting entries (FEC),” <https://www.taxathand.com/article/1236/France/2014/FTA-Guidelines-on-file-of-accounting-entries-FEC>, 검색일자: 2020. 1. 8.
- \_\_\_\_\_, “New rules introduced for processing, issuance and storage of invoices,” <https://www.taxathand.com/article/11199/Portugal/2019/New-rules-introduced-for-processing-issuance-and-storage-of-invoices>, 검색일자: 2021. 4. 8.
- \_\_\_\_\_, “The File of accounting entries (FEC) of,” <https://www.taxathand.com/article/1235/France/2014/The-File-of-accounting-entries-FEC-of>, 검색일자: 2020. 1. 4.
- Deloitte, taxCube™ - “Deloitte's Market Leading SAF-T Reporting Tool,” [https://www2.deloitte.com/no/no/pages/tax/articles/saf-t/english/taxcube-deloitte.html?gclid=Cj0KCQjwp86EBhD7ARIsAFkgakgrg6liPReFMYz-gCi20gEf9hXnd9HhSdeUw1lJcNUK9af\\_Wx81dIaAqdHEALw\\_wcB](https://www2.deloitte.com/no/no/pages/tax/articles/saf-t/english/taxcube-deloitte.html?gclid=Cj0KCQjwp86EBhD7ARIsAFkgakgrg6liPReFMYz-gCi20gEf9hXnd9HhSdeUw1lJcNUK9af_Wx81dIaAqdHEALw_wcB), 검색일자: 2021. 5. 6.
- e-fatura, <https://faturas.portaldasfinancas.gov.pt>, 검색일자: 2021. 4. 6.

- EY, "Tax authorities are going digital: Stay ahead and comply with confidence," [https://assets.ey.com/content/dam/ey-sites/ey-com/en\\_gl/topics/digital/ey-tax-authorities-are-going-digital.pdf](https://assets.ey.com/content/dam/ey-sites/ey-com/en_gl/topics/digital/ey-tax-authorities-are-going-digital.pdf), 2017, 검색일자: 2021. 7. 28.
- Garrigues, "Amendments on SAF-T accounting file and reporting obligation on the establishments where invoices are issued," [https://www.garrigues.com/en\\_GB/new/amendments-saf-t-accounting-file-and-reporting-obligation-establishments-where-invoices-are](https://www.garrigues.com/en_GB/new/amendments-saf-t-accounting-file-and-reporting-obligation-establishments-where-invoices-are), 검색일자: 2021. 4. 8.
- Indirect Tax Reporting Trends "SAP AND SAF-T POLAND," <https://globalindirecttaxmanagement.com/thought-leadership-publications/chapter-2-building-blocks-of-an-indirect-tax-strategic-plan-4/sap-and-saf-t-poland.html>, 검색일자: 2021. 5. 12.
- IBFD, "European Union - Are You Ready for the Tax Technology?," [https://www.ibfd.org/sites/ibfd.org/files/content/pdf/ivm\\_2019\\_02\\_e2\\_1.pdf?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media&utm\\_campaign=tweet-week-14&utm\\_content=pdf/ivm\\_2019\\_02\\_e2\\_1](https://www.ibfd.org/sites/ibfd.org/files/content/pdf/ivm_2019_02_e2_1.pdf?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media&utm_campaign=tweet-week-14&utm_content=pdf/ivm_2019_02_e2_1), 검색일자: 2021. 5. 3.
- IOTA "The Spanish Tax Agency (AEAT) takes a step forward to the pre-filled VAT return," <https://www.iota-tax.org/news/spanish-tax-agency-aeat-takes-step-forward-pre-filled-vat-return>, 검색일자: 2021. 4. 21.
- ITR, "SAF-T in Portugal, a decade of tax data standardisation," <https://www.internationaltaxreview.com/article/b1f7n1dvdbfyzv/saft-in-portugal-a-decade-of-tax-data-standardisation>, 검색일자: 2021. 4. 8.
- KPMG, "A new digital VAT return," <https://home.kpmg/no/nb/home/nyheter-og-innsikt/2021/01/a-new-digital-vat-return.html>, 검색일자: 2021. 4. 7.
- \_\_\_\_\_, "Un outil au service de l'administration en cas de contrôle fiscal?," <https://www.kpmg-pulse.fr/le-fichier-des-ecritures-comptables-un-outil-au-service-de-ladministration-en-cas-de-controle-fiscal>, 검색일자: 2021. 4. 5.
- Le Coin des Entrepreneurs, "Le fichier des écritures comptables(FEC): ce qu'il faut savoir," <https://www.lecoindesentrepreneurs.fr/fichier-des-ecritures>

- comptables, 검색일자: 2020. 1. 15.
- Legalstart.fr, “Fiscalite-entreprises (micro-big),” <https://www.legalstart.fr/fiches-pratiques/fiscalite-entreprises/micro-bic>, 검색일자: 2020. 1. 4.
- Manupard, “New FEC File,” <https://www.maupard.com/new-fec-file>, 검색일자: 2020. 1. 15.
- Marosavat, “Penalties on Spanish SII start applying,” <https://marosavat.com/penalties-on-spanish-sii-start-applying>, 검색일자: 2021. 4. 21.
- My Oracle Support, “E1: 70: OECD SAF-T VAT - V2.0 (Updated March 26, 2020) (Doc ID 2604646.1),” [https://support.oracle.com/knowledge/JD%20Edwards%20EnterpriseOne/2604646\\_1.html](https://support.oracle.com/knowledge/JD%20Edwards%20EnterpriseOne/2604646_1.html), 검색일자: 2021. 5. 6.
- NEWCO, “SAF-T in Portugal,” <https://www.newco.pro/en/blog/saf-t-in-portugal>  
\_\_\_\_\_, “SAF-T: What Changes in 2020?,” <https://www.newco.pro/en/blog/saf-t-what-changes-in-2020>, 검색일자: 2021. 4. 7.
- OECD, *Guidance for the Standard Audit File – Tax Version 2.0.*, <https://www.oecd.org/tax/forum-on-tax-administration/publications-and-products/technologies/45045602.pdf>, 검색일자: 2021. 4. 28.
- Oracle Help Center, “JD Edwards EnterpriseOne Applications Localizations for Portugal Implementation Guide,” [https://docs.oracle.com/cd/E16582\\_01/doc.91/e23360/saft\\_pt.htm#EOAPT2080](https://docs.oracle.com/cd/E16582_01/doc.91/e23360/saft_pt.htm#EOAPT2080), 검색일자: 2021. 5. 6.
- \_\_\_\_\_, “JD Edwards EnterpriseOne Applications OECD Standard Audit File for Tax Purposes (SAF-T) Localizations Implementation Guide,” [https://docs.oracle.com/cd/E16582\\_01/doc.91/e97460/ch\\_eu\\_saft\\_xml.htm#EOAST109](https://docs.oracle.com/cd/E16582_01/doc.91/e97460/ch_eu_saft_xml.htm#EOAST109), 검색일자: 2021. 5. 6.
- Pagergo, “E-book reporting scheme in Greece, explained, July 20th, 2020,” <https://www.pagero.com/news/e-book-reporting-scheme-in-greece>, 검색일자: 2021. 7. 2.
- Pikon, “vat-reporting,” <https://www.pikon.com/en/sii-spain-sap-document-compliance-b2b-vat-reporting/>, 검색일자: 2021. 4. 9.

- PWC, "Nye krav til mva-melding fra 1. januar 2022," <https://blogg.pwc.no/skattebloggen/nye-krav-til-mva-melding-fra-1.-januar-2022> 검색일자: 2021. 4. 7.
- \_\_\_\_\_, "Portugal Corporate - Tax credits and incentives," <https://taxsummaries.pwc.com/portugal/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검색일자: 2021. 6. 14.
- S4FN, "SAP Add On Solution Norway SAF-T," <https://s4fn.com/sap-add-solution-norway>, 검색일자: 2021. 5. 6.
- SAP Help Portal, "Luxembourg- Financial Accounting - Taxes- SAF-T," <https://help.sap.com/viewer/51ce7d5142874108b6146e754512323b/6.18.06/en-US/ae4da55150d8cc7de10000000a441470.html>, 검색일자: 2021. 5. 6.
- \_\_\_\_\_, "Portugal - Financial Accounting - SAF-T," <https://help.sap.com/viewer/00036c20095c4adc8d3e3c605b1dfab7/6.18.16/en-US/ae4da55150d8cc7de10000000a441470.html?q=saf-t>, 검색일자: 2021. 5. 6.
- \_\_\_\_\_, "Standard Audit Files for Tax Purposes (SAF-T) (Portugal)," <https://help.sap.com/viewer/742bec7aff5a47db960d2c3bf21d3ffe/6.18.11/en-US>, 검색일자: 2021. 1. 5.
- \_\_\_\_\_, "VAT Declaration," <https://help.sap.com/viewer/9b351d6e33a0496598e4b58782565e8a/1709%20001/en-US/7223b05278636656e10000000a445394.html>, 검색일자: 2021. 1. 14.
- \_\_\_\_\_, "What's New for SAP ERP, Add-on for Polish SAF-T Regulatory Requiremen," <https://help.sap.com/viewer/cbde0903348f43afaffa158e9922bd6f/1.0/en-US>, 검색일자: 2021. 5. 6.
- SNI, "Greece Mandatory myDATA e-books Scheme and Electronic Invoices," February 9, 2021, <https://snitechnology.net/blog/greece-mandatory-mydata-e-books-scheme-and-electronic-invoices>, 검색일자: 2021. 7. 2.
- \_\_\_\_\_, "SAF-T France," <https://www.snitechnology.net/en/saft-france.html>, 검색일자: 2021. 1. 15.

- SOVOS, “Greece: myDATA law is published as e-invoicing incentives are released,” June 26, 2020, <https://sovos.com/blog/vat/greece-mydata-law-is-published-as-e-invoicing-incentives-are-released>, 검색일자: 2021. 7. 2.
- \_\_\_\_\_, “Greece Publishes Accreditation Scheme for E-invoicing Service Providers,” February 27, 2020, [https://sovos.com/blog/vat/greece-publishes-accreditation-scheme-for-e-invoicing-service-providers/?utm\\_medium=social&utm\\_source=linkedin&utm\\_campaign=product&utm\\_term=einvoicing&utm\\_content=social-ad](https://sovos.com/blog/vat/greece-publishes-accreditation-scheme-for-e-invoicing-service-providers/?utm_medium=social&utm_source=linkedin&utm_campaign=product&utm_term=einvoicing&utm_content=social-ad), 검색일자: 2021. 7. 2.
- \_\_\_\_\_, “Norway to Mandate SAF-T Reporting from 2020,” 2019, <https://sovos.com/blog/2019/12/12/norway-to-mandate-saf-t-reporting-from-2020>, 검색일자: 2021. 5. 12.
- \_\_\_\_\_, “Norway’s New 2022 VAT Return: Detailed and Digital,” <https://sovos.com/blog/2021/03/30/norways-new-2022-vat-return-detailed-and-digital>, 검색일자: 2021. 4. 7.
- Tax Cube, <https://www.taxcube.lt/en>, 검색일자: 2021. 5. 6.
- Tax Notes, “Emerging From Crisis: The Changing EU VAT Landscape,” <https://www.taxnotes.com/tax-notes-international/value-added-tax/emerging-crisis-changing-eu-vat-landscape/2020/10/19/2d1jt?highlight=saf-t>, 검색일자: 2021. 5. 13.



세정연구 21-02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전략적 도입 방안**

---

발 행 2021년 8월 31일

저 자 정훈 · 박하얀 · 권순오 · 변정윤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쇄 디자인 범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ISBN 979-11-6655-069-0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세정연구 21-02

# 표준세무감사파일의 전략적 도입 방안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